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교육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 】

2019.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8. 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65.3조원, 총지출 434.1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2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0.6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7.1조원, 7.9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따른 경기하방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경기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절한 운용 방향 및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9건의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인 분석을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4대 공적연금, 일자리사업, 미세먼지 대응사업 등 34건의 주요 재정 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소관 개별 사업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수록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성과계획서와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성인지 결산서의 실효성과 제도개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분석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차 례

CONTENTS

교육위원회

[교육부]

I. 결산 개요 / 1

- 1. 현 황 1
- 2.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9
- 3. 2018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1

II. 주요 현안 분석 / 13

-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13
 - 1-1. 학령인구 감소 여건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목표 및 중기계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15
 -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내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정산분 교부액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마련 필요 23
 - 1-3. 보통교부금 자체노력 수요 항목의 합리적인 운영 필요 27
 - 1-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운용 기준 정비 필요 33
-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 38
 - 2-1. 국가장학금의 지출 증가를 고려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 40
 - 2-2. 국가장학금 지원의 합리적인 집행 필요 44
 - 2-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집행률 및 청년지원 실적 저조 49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결산 분석	54
3-1. 사학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55
3-2.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64

III. 개별 사업 분석 / 67

1.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67
2. 누리과정 자원분담 및 지원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필요	70
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의 사업성과 제고 필요	75
4.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	79
5. 국가교육회의의 사업 수행 시 재정규율 준수 필요	82
6. 「국립대학 회계법」에 따른 국립대학 지원사업 운영 필요	88
7.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의 효과 제고 필요	91
8.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추경사업 성과 저조	95
9.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의 철저한 운영 관리 필요	100
10.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의 프랑스 현지학교 국제섹션 운영 성과 제고 필요 ...	104
※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107

부속
표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조 956억 8,500만원이며, 4조 1,70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9%인 4조 1,680억 5,700만원을 수납하고 23억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4,3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4,202	194,202	194,202	177,032	174,595	2,395	43	98.6
지역발전특별회계	8,766	8,766	8,766	12,653	12,653	0	0	100.0
유아교육자원특별회계	3,892,717	3,892,717	3,892,717	3,980,809	3,980,809	0	0	100.0
합계	4,095,685	4,095,685	4,095,685	4,170,494	4,168,057	2,395	43	99.9

자료: 교육부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8조 7,686억 8,200백만원이며, 이 중 99.8%인 68조 6,284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275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26억 3,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3,872,934	64,027,248	64,084,403	63,970,108	4,828	109,467	99.8
지역발전특별회계	783,562	791,562	791,562	765,636	22,759	3,167	96.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92,717	3,892,717	3,892,717	3,892,717	0	0	100.0
합계	68,549,213	68,711,527	68,768,682	68,628,461	27,587	112,634	99.8

자료: 교육부

나. 기금 결산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12조 2,342억 8,600만원이며, 9조 7,960억 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7.4%인 9조 5,456억 6,100만원을 수납하고, 2,470억 5,100만원은 미수납하였으며 32억 9,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677,470	11,677,470	11,677,470	9,243,062	9,013,743	227,738	1,581	97.5
사학진흥기금	556,690	556,816	556,816	552,947	531,918	19,313	1,716	96.2
합계	12,234,160	12,234,286	12,234,286	9,796,009	9,545,661	247,051	3,297	97.4

자료: 교육부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2조 2,367억 1,800만원이며, 이 중 78.0%인 9조 5,456억 6,100만원을 지출하고, 80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4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677,470	11,677,470	11,679,902	9,013,743	7,869	37,705	77.2
사학진흥기금	556,690	556,816	556,816	531,918	142	6,715	95.5
합계	12,234,160	12,234,286	12,236,718	9,545,661	8,011	44,420	78.0

자료: 교육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183억 3,100만원 (12.2%)이 감소한 5조 1,301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438억 800만원 (0.8%)이 감소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46,011	163,061	163,061	235,432	72,371	89,421
기금	5,027,977	5,685,450	5,685,450	4,894,748	△790,702	△133,229
합계	5,173,988	5,848,511	5,848,511	5,130,180	△718,331	△43,808

자료: 교육부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603억 4,000만원 (0.2%)이 증가한 68조 5,548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조 3,041억 4,700만원(8.4%)이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A)	2018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58,845,066	63,840,259	64,002,577	63,919,515	△83,062	5,074,449
기금	4,405,682	4,391,978	4,391,978	4,635,380	243,402	229,698
합계	63,250,748	68,232,237	68,394,555	68,554,895	160,340	5,304,147

자료: 교육부

라. 재무 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 교육부 자산은 46조 6,761억 3,600만원, 부채는 1조 7,393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44조 9,367억 8,7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7조 7,132억 5,600만원, 투자자산 12조 7,006억 700만원, 일반 유형자산 26조 1,982억 4,700만원, 무형자산 563억 2,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7억 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763억 2,000만원(1.5%)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자산 7,534억 6,500만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1조 528억 5,100만원의 증가 및 일반유형자산 3,830억 8,4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353억 820만원, 장기차입부채 9,678억 3,600만원, 장기충당부채 10억 2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6,351억 3,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489억 300만원(9.4%)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2,721억 1,1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46,676,136	45,999,816	676,320	1.5
Ⅰ. 유동자산	7,713,256	8,466,721	△753,465	△8.9
Ⅱ. 투자자산	12,700,607	11,647,756	1,052,851	9.0
Ⅲ. 일반유형자산	26,198,247	25,815,163	383,084	1.5
Ⅳ. 사회기반시설	0	0	0	0.0
Ⅴ. 무형자산	56,321	63,204	△6,883	△10.9
Ⅵ. 기타비유동자산	7,706	6,973	733	10.5
부 채	1,739,350	1,590,447	148,903	9.4
Ⅰ. 유동부채	135,382	283,098	△147,716	△52.2
Ⅱ. 장기차입부채	967,836	695,725	272,111	39.1
Ⅲ. 장기충당부채	1,002	860	142	16.5
Ⅳ. 기타비유동부채	635,130	610,765	24,365	4.0
순 자 산	44,936,787	44,409,370	527,417	1.2
Ⅰ. 기본순자산	19,562,271	19,562,271	-	0.0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6,111,668	14,620,438	1,491,230	10.2
Ⅲ. 순자산 조정	9,262,848	10,226,661	△963,813	△9.4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66조 6,012억 7,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70조 5,303억 4,500만원, 관리운영비 1,554억 1,500만원, 비배분비용 6,801억 8,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조 2,465억 8,200만원, 비배분수익 1조 5,193억 1,200만원, 비교환수익 등 12억 2,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5조 8,710억 6,800만원(9.7%) 증가한 66조 6,012억 7,500만원이며,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등지급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5조 7,746억 9,7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프로그램(52조 4,527억 8600만원)과 맞춤형 국가장학제도기반조성 프로그램(4조 2,138억 200만원), 지방교육정책지원 프로그램(3조 8,046억 2,53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49억 6,027만원과 경비 804억 5,449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4,765억 5,248만원과 기타비용 1,283억 9,593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67,283,763	61,509,066	5,774,697	9.4
가. 프로그램 총원가	70,530,345	64,462,724	6,067,621	9.4
나. 프로그램 수익	3,246,582	2,953,658	292,924	9.9
II. 관리운영비	155,415	137,699	17,716	12.9
III. 비배분비용	680,183	633,404	46,779	7.4
IV. 비배분수익	1,519,312	1,551,217	△31,905	△2.1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66,600,049	60,728,952	5,871,097	9.7
VI. 비교환수익 등	△1,225	△1,255	30	2.4
VII. 재정운영결과(V - VI)	66,601,275	60,730,207	5,871,068	9.7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18년도 기초순자산은 44조 4,093억 7,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44조 9,367억 8,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274억 1,700만원(1.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5조 8,710억 6,8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 중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5,724억 3,100만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6조 1,235억 7,2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8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6조 1,653억 8,387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18억 1198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감소 1조 6,389억 2,198만원, 자산재평가이익 증가 664억 6,436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44,409,370	42,562,026	1,847,344	4.3
II. 재정운영결과	66,601,275	60,730,207	5,871,068	9.7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68,092,505	61,968,933	6,123,572	9.9
IV. 조정항목	△963,813	608,618	△1,572,431	△258.4
V. 기말순자산(I-II+III+IV)	44,936,787	44,409,370	527,417	1.2

자료: 교육부

마. 재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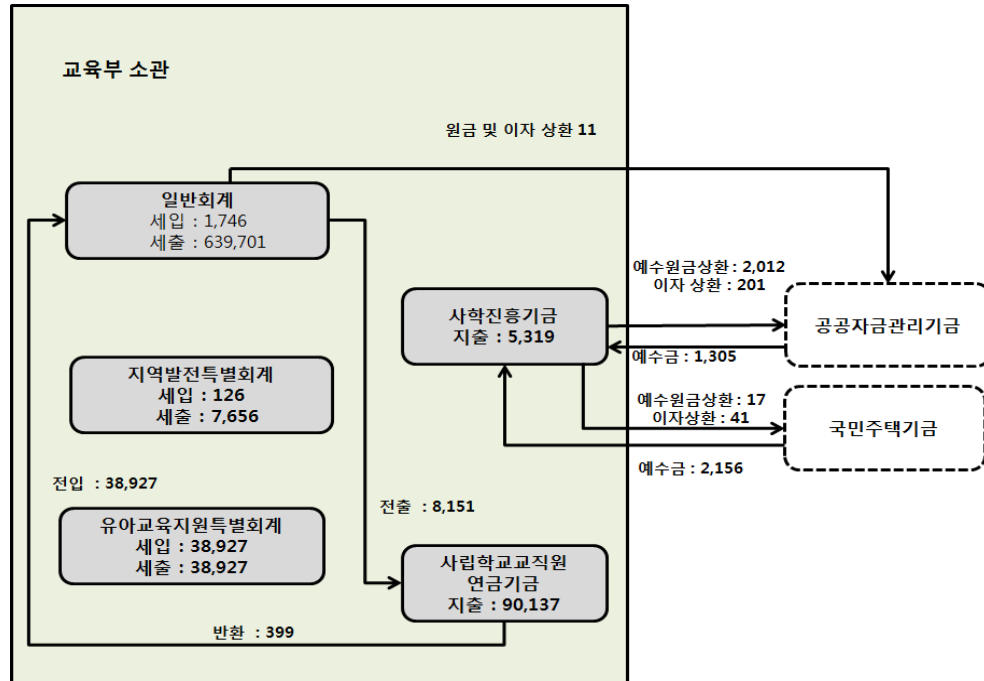
2018회계연도 교육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먼저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3조 8,927억원 전출되었고, 일반회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8,151억원 전출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1억원 전출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99억원 반환하였다.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305억원 예수하였고 2,21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2,156억원을 예수하였고 58억원을 상환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국립대학 혁신지원, ② 평생교육바우처, ③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④ 한국장학재단 출연 등이 있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은 여타 대학재정사업과의 지원 내용 및 분야가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200억원이 감액(1,000억원 → 800억원)되었고,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학습비용 지원만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데 제한적인 면과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30억원이 감액(54억원 → 24억원)되었고,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중 사회적경제 학과 육성은 평생교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감액(30억원 → 0억원)되었다. 한국장학재단 출연사업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대납이자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이차보전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규모의 과다 추계를 고려하여 50억원이 감액(2,026억원 → 1,976억원)되었다.¹⁾²⁾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립대학 시설확충, ②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③ 인문사회 기초연구 등이 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은 국립대학의 내진보강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805억원 증액(4,425억원 → 5,231억원)되었고,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00억원 증액(2,407억원 → 2,507억원)되었으며 인문사회 기초연구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간 연구지원 격차 심화에 따른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30억원 증액(1,440억원 → 1,470억원)되었다.³⁾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누리과정 예산 지원, ② 국립대학 혁신지원, ③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등이 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교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으며, 국립대학 혁신지원은 “9개 거점대학과 30개 지역중심대학의 학생 수 등을 반영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이 채택되었고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 원인을 분석해서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 채택되었다.⁵⁾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②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등이 있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40억원 감액(975억원 → 735억원)되었으며, 취업장려금 지급 후 관리방안 및 환수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교실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감안하여 210억원 증액(0억원 → 210억원)되었다.⁶⁾⁷⁾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017.11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5) 국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7.12.

6)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18.5.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5.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행복한 학교, 모두의 성장이 열려 있는 사회를 2018년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3개 회계⁸⁾ 및 2개 기금⁹⁾의 34개 프로그램, 224개 세부사업을 통해 ① 공교육 책임 강화 및 학생 중심의 혁신 교육환경 조성 지원, ②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③ 생애 단계별 평생·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8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8년 추경사업 중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은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중 추경으로 편성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집행률이 22.8%로 저조하고 청년층이 아닌 지원자의 비중이 29.5%이다.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경우 추경예산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 충원률이 낮은 등 추경예산의 사업성과가 본예산에 비해 저조하였다.

셋째, 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적으로 집행액이 감소하여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사업운영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8)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9)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구체적으로, 교육급여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여 집행률이 2016년 77.0%, 2017년 74.6%, 2018년 81.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3-5세아) 수 감소에 따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액은 2016~2019년 동안 2,980억원 감소하였으며, 실 집행액은 더욱 감소하여 2017년 891억원이 불용되었다. 대학생수는 2012년 234만 명에서 2018년 217만명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가장학금 I유형의 불용액이 2016년 709억원, 2017년 2,138억원, 2018년 1,575억원 발생하였다.

넷째, 사학연금 국내주식의 장기수익률이 저조하여 분산투자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 수익률은 9년 평균 수익률이 2.49%로 국내채권 수익률 4.76%보다 낮은 수준이며, 5년 평균수익률이 0.01%로 국내채권 수익률 4.07%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은 9년 평균 $\Delta 0.95\%$, 5년 평균 $\Delta 1.69\%$ 를 기록하여 시장수익률 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²⁾에 따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고, 특별교부금은 다시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의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부족액을 기준으로 “내국세³⁾ 20.27%⁴⁾의 97% 및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분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교부한다.⁵⁾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등 기준재정수요로 산정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내국세 20.27%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며,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은 전체 특별교부금의 60%, 지역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의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보통교부금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프로그램 1500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3) 내국세란 국세 중에서 관세,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20%, 그리고 주세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4) 2019년에는 국세-지방세 조정에 따라 축소되는 교부금 보전을 위해 내국세분 비율을 20.27%에서 0.19% 인상된 20.46%로 조정하였다.

5) 2017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8.1.1. 시행)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96% → 97%)하고,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 → 3%)하였다.

본예산은 47조 6,956억원이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이 변경(96:4→97:3)됨에 따라 4,613억원을 증액 전용하여 48조 1,569억원을 교부하였다. 특별교부금의 본예산은 1조 8,451억원이며 4,613억원을 감액 전용하여 1조 3,838억원이 교부되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용도를 재해 예방까지 확대 교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8.1.1. 시행)⁶⁾이 이루어졌다.

[2018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회계 포함 ¹⁾)	49,540,693 (53,433,410)	49,540,693 (53,433,410)	0	0	0	49,540,693 (53,433,410)	49,540,693 (53,433,410)	0	0
보통교부금	47,695,613	47,695,613	0	461,270	0	48,156,883	48,156,883	0	0
특별교부금	1,845,080	1,845,080	0	△461,270	0	1,383,810	1,383,810	0	0
국가시책	1,107,048	1,107,048	0	△276,762	0	830,286	830,286	0	0
지역현안	553,524	553,524	0	△138,381	0	415,143	415,143	0	0
재난안전관리	184,508	184,508	0	△46,127	0	138,381	138,381	0	0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 포함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8.1.1 시행)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내국세분 비율이 변경됨(96:4→97:3)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증액 전용

자료: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경우 국가시책 8,303억원(89개 사업), 지역현안 4,151억원(650개 사업), 재난안전관리 1,384억원(3개 사업)이 교부되었다.

[2018회계연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

(단위: 건, 개, 백만원)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교부건수	사업 수	금액	교부건수	사업 수	금액	교부건수	사업 수	금액
157	89	830,286	2	650	415,143	5	3	138,381

자료: 교육부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생략)

1. ~ 2. (생략)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1-1. 학령인구 감소 여건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목표 및 중기계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가. 현 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의 관련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의 일반회계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을 형성하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2018년 최종예산 기준 71.1%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는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분 제외)(2018년 기준)로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으며, 내국세 중 비중은 2005년 19.4%, 2008년 20.0%, 2010년 20.27%, 2019년 20.46%로 인상되었다.

나. 분석의견

①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교육재정 운용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출구조 및 교육여건에 다음과 같은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2010~2018년 연평균 6.1% 증가한 73조 7,371억원 규모이며, 이는 시·도교육청 수입의 71.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0년 32조 4,281억원에서 2018년 52조 4,528억원으로 연평균 6.2%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긴 하지만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내국세 규모가 증가하므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는 2010년 733만명에서 2018년 569만명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1인당 시·도교육청 예산 규모는 2010년 628만원에서 2018년 1,294만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하였다.

[학령인구 1인당 시·도교육청 예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단위: 억원, 만명,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시·도교육청 최종예산	460,890	486,293	524,043	550,727	578,283	596,920	619,642	682,644	737,371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24,281	361,354	392,492	410,619	408,681	394,056	431,615	465,910	524,528	6.2
보통교부금	312,910	348,782	378,558	396,105	394,117	380,186	416,399	448,084	509,499	6.3
특별교부금	11,371	12,572	13,934	14,514	14,564	13,870	15,216	17,826	15,029	3.5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	733	711	686	657	638	620	602	583	569	△3.1
학생 1인당 최종예산	6.28	6.84	7.64	8.38	9.06	9.62	10.28	11.70	12.94	9.5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2	5.08	5.72	6.25	6.41	6.36	7.17	7.99	9.22	9.6

주: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 교부기준(세계잉여금, 추경예산 포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및 보통교부금 교부 현황 보고

둘째, 교직원 및 교실수 등은 증가하고 학생수는 감소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교실수 등의 증가에 따라 인건비 및 자본지출은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2011~2018년 연평균 5.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9%에서 2016년 59.8%로 상승하였다. 다만 인건비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55.1%)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지출의 경

우 동 기간동안 7.0%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1.0%에서 2018년 11.7%로 증가하였다.

[시·도교육청 성질별 지출]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	486,293 (100.0)	524,043 (100.0)	550,727 (100.0)	578,283 (100.0)	596,920 (100.0)	619,642 (100.0)	682,644 (100.0)	737,371 (100.0)	6.1
- 인건비	286,423 (58.9)	304,068 (58.0)	320,697 (58.2)	333,233 (57.6)	357,237 (59.8)	368,732 (59.5)	384,370 (56.3)	406,531 (55.1)	5.1
- 물건비	14,797 (3.0)	16,471 (3.1)	22,944 (4.2)	20,873 (3.6)	20,838 (3.5)	21,336 (3.4)	22,619 (3.3)	25,265 (3.4)	7.9
- 이전지출	4,253 (0.9)	10,299 (2.0)	20,343 (3.7)	27,724 (4.8)	30,560 (5.1)	30,984 (5.0)	33,089 (4.8)	34,633 (4.7)	34.9
- 자본지출	53,682 (11.0)	57,033 (10.9)	55,900 (10.2)	49,078 (8.5)	64,395 (10.8)	68,587 (11.1)	83,879 (12.3)	86,378 (11.7)	7.0
- 상환지출	15,865 (3.3)	9,089 (1.7)	247 (0.0)	19,883 (3.4)	1,167 (0.2)	3,924 (0.6)	26,583 (3.9)	39,794 (5.4)	14.0
- 전출금 등	103,796 (21.3)	120,860 (23.1)	126,421 (23.0)	124,230 (21.5)	118,677 (19.9)	121,801 (19.7)	128,432 (18.8)	140,560 (19.0)	4.4
- 예비비 및 기타	7,479 (1.5)	6,223 (1.2)	4,174 (0.8)	3,262 (0.6)	4,007 (0.7)	4,279 (0.7)	3,671 (0.5)	4,210 (0.6)	△7.9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에서 감소 추세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28.7명(35.8명)에서 2018년 14.5명(22.3명)으로 감소하고, 중학교의 경우 동기간 20.1명(38.0명)에서 12.1명(25.7명)으로 감소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19.9명(24.7명)에서 11.5명(26.2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교원 1인당 학생 수 격차는 2008~2016년 동안 축소되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학생 수(초등학교 기준 16.5명)는 OECD 평균(15.0명)과 유사한 수준이다.

7)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비 및 유무형 자산취득비

[학교급별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단위: 명)

연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0	19.5	28.7	20.1	19.9	26.3	35.8	38.0	42.7
2011	14.6	17.3	17.3	14.8	20.9	25.5	33.0	33.1
2016	13.3	14.6	13.3	12.9	19.7	22.4	27.4	29.3
2018	12.3	14.5	12.1	11.5	17.9	22.3	25.7	26.2

주: 1. 조사 기준일 매년 4월 1일

2.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 / 교원 수

3. 교원에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 및 강사는 제외됨(단, 휴직교원 포함)

4. 직위별로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포함됨

5. 각 연도 국·공립 및 사립학교 대상 4월 1일 기준임

자료: 교육부(출처: 교육기본통계조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OECD 주요국 학교급별 교사 1인당 학생수 추이]

(단위: 명/교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A)	2016 (B)	차이 (B-A)	2008 (A)	2016 (B)	차이 (B-A)	2008 (A)	2016 (B)	차이 (B-A)
핀란드	14.4	13.3	△1.1	10.6	9.0	△1.6	15.9	17.2	1.3
프랑스	19.9	19.4	△0.5	14.6	14.7	0.1	9.4	11.3	1.9
독 일	18.0	15.3	△2.7	15.0	13.2	△1.8	14.0	12.9	△1.1
일 본	18.8	16.6	△2.2	14.7	13.4	△1.3	12.3	11.8	△0.5
한 국	24.1	16.5	△7.6	20.2	14.7	△5.5	16.5	13.8	△2.7
영 국	20.2	16.9	△3.3	15.0	14.8	△0.2	12.4	16.5	4.1
미 국	14.3	15.2	0.9	14.8	15.3	0.5	15.6	15.5	△0.1
OECD 평균	16.4	15.0	△1.4	13.7	12.7	△1.0	13.5	13.0	△0.5

주: 1. OECD 기준 교원은 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교사 및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휴직교원 및 기간제 교사 포함)임

2.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3.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4.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각 연도를 토대로 교육부 작성

셋째,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지출 중 복지 예산의 증가율이 높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보면, 교육복지지원과 보건/급식/체육활동의 2010~2018년 연평균증가율이 19.4%, 13.8%로 세출예산액 증가율 6.1%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누리과정, 무상급식의 도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시·도교육청 단위사업별 지출]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세출예산액	460,890	486,293	524,043	550,727	578,283	596,920	619,642	682,644	737,371	6.1
인적자원운용	240,818	250,787	265,435	276,713	284,930	301,270	307,075	318,681	335,859	4.2
교수학습 활동지원	35,081	41,651	46,281	36,083	31,246	28,817	34,368	40,547	45,537	3.3
교육복지지원	17,693	21,292	30,262	51,273	57,033	63,193	65,268	70,371	72,943	19.4
- 급식지원	5,334	6,218	6,904	6,727	6,342	6,528	7,273	13,073	15,577	-
- 누리과정지원	0	0	10,214	26,771	33,795	39,521	39,732	39,254	39,688	-
보건/급식/ 체육활동	8,089	10,631	12,927	17,412	16,145	16,877	20,053	18,524	22,695	13.8
- 급식관리	6,390	9,359	11,438	16,065	14,805	15,145	18,750	16,794	20,006	-
학교재정 지원관리	74,263	83,719	95,794	97,561	99,747	103,593	102,014	105,441	111,544	5.2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54,829	42,484	45,047	47,076	45,172	56,772	60,166	71,544	73,179	3.7
평생교육	1,353	1,304	1,468	1,361	1,218	1,129	1,287	1,418	1,468	1.0
직업교육	549	465	517	162	81	105	168	160	190	△125
교육행정일반	6,522	4,313	4,837	4,421	5,754	4,583	6,002	8,056	11,466	7.3
기관운영관리	5,393	5,358	6,211	4,906	4,101	5,671	4,473	6,712	7,058	3.4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8,394	16,842	9,143	9,637	29,633	10,992	14,814	37,637	51,447	25.4
여비비밀기타	7,908	7,448	6,123	4,120	3,224	3,917	3,955	3,550	3,986	△8.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교육복지지원 중 급식지원 세부사업은 2010년 5,334억원에서 2018년 1조 5,57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중 급식관리 세부사업이 2010년

6,390억원에서 2018년 2조 6억원으로 증가하였다.⁸⁾ 누리과정 세부사업은 2012년 1조 214억원으로 신규 도입되어 2018년 3조 9,68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2019년 이후에도 고교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 무상교육 실시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2·3학년 대상,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⁹⁾ 시·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¹⁰⁾하여, 2019년부터 시·도교육청 부담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¹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교육청 수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어 결정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방교육재정 운

8) 2010년 교육감선거를 기점으로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청은 급식지원 사업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시·도교육청 예산은 2015년 1조 4,949억원, 2016년 1조 7,064억원, 2017년 1조 8,115억원, 2018년 2조 1,65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9)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계획(2021년 기준)]

총 액	국 가	시·도교육청	지자체
1조 9,951억원 (100%)	9,466억원 (47.5%)	9,466억원 (47.5%)	1,019억원 (5.0%)
- 기존지원금	1,481억원	5,388억원	1,019억원
- 추가소요액	7,985억원	4,078억원	-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9.4.9.), 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10)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11) [시·도교육청 부담 무상교복 도입 현황]

	지원대상	2019년 예산	재원분담율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7,317백만원	교육청 1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2,610백만원	교육청 100%
충청남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5,793백만원	교육청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14,216백만원	교육청 50%, 시 30%, 군구 20%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3,246백만원	교육청 100%
경기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고등학생 20년 시행)	38,300백만원(20년 고등학교 확대 시 76,500백만원)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
전라남도교육청	중학교 신입생	2,700백만원	교육청 50~100%, 시군 50%

자료: 보건복지부

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②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목표 및 중기계획의 면밀한 수립 필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육재정 운용에 있어서 재정운용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1인당 시·도교육청 예산,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의 지표는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교육부는 교육재정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582만명에서 2030년 426만명, 2067년 26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단위: 만명)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7
초(6-11)	272	272	233	180	200	208	191	173	160	140	125
중(12-14)	138	136	140	114	87	102	104	94	86	79	65
고(15-17)	172	138	136	132	96	92	105	100	90	83	71
합계	582	546	509	426	383	402	400	367	336	302	261

주: 1. 교부금 지원대상 학생수와 실제 학생수는 다름

2. 중위 기준

자료: 통계청

내국세에 연동되어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명확한 목표 없이 운영할 경우 재정이 불필요한 사업이 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변하고 있고 많은 재원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신규 복지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장기 지방교육재정운용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¹²⁾는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시·도교육청 예산을 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 없이 지출하다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고 지

12)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생략)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략)

제10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방교육재정에 추가적인 국고가 투입될 우려가 있다.

특히 복지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 장래 재정소요, 우선순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규사업 추진 시 중기지방교육재정운용계획에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교육재정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내국세수입 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정산분 교부액에 대한 국회보고 절차 마련 필요

가. 현 황

「국가재정법」 제90조¹³⁾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¹⁴⁾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18년도에 교부된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은 2조 9,121억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금은 2조 9,730억원, 특별교부금은 1,191억원이다. 다만, 세계잉여금 정산액은 기획재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직접 교부하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규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18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본예산	예산현액(A)	세계잉여금정산(B)	합 계(A+B)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5,407	495,407	29,121	524,528
보통교부금	476,956	481,569	27,930	509,499
특별교부금	18,451	13,838	1,191	15,029
국가시책	11,071	8,303	715	9,018
지역현안	5,535	4,151	357	4,508
재난안전관리	1,845	1,384	119	1,503

주: 세계잉여금 정산은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2018년도에 교부한 것임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정부의 내국세 수입 전망 오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과소추계로 중앙으로부터 시·도교육청으로의 교부금 정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자금 집행을 위하여 내국세 수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최근 3년 동안 내국세 수입 전망 오차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과 최종분의 차이도 증가하고 있다.¹⁵⁾

15) 교육세는 2014~2015년을 제외하고 결산 규모가 예산 규모보다 줄어들었다. 2016년 예산 4.97조원, 결산 4.88조원, 2017년 예산 5.07조원, 결산 5.01조원이다.

[국세수입 결산, 세계잉여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액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A)	결산(B)	차액(B-A)		본예산	정산분
2006	1,070,986	1,104,704	33,718	13,730	245,966	0
2007	1,175,895	1,302,402	126,507	153,428	262,219	0
2008	1,339,901	1,345,444	5,543	45,763	306,388	24,542
2009	1,303,545	1,337,060	33,515	36,087	304,280	1,109
2010	1,369,327	1,406,279	36,952	59,514	322,980	1,301
2011	1,513,632	1,570,725	57,093	51,285	352,831	8,523
2012	1,661,454	1,667,724	6,270	8,533	384,473	8,019
2013	1,737,630	1,658,988	△78,642	812	410,619	0
2014	1,796,210	1,712,599	△83,611	964	408,681	0
2015	1,798,410	1,820,129	21,719	25,277	394,056	0
2016	1,964,414	2,061,926	97,512	60,920	412,284	0
2017	2,131,013	2,277,690	146,677	100,422	429,317	18,725
2018	2,279,802	2,547,702	267,900	106,575	495,407	29,121
2019	2,552,206	-	-	-	552,488	52,817

주: 정산분은 전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당해연도에 교부된 것임
자료: 교육부

초과 내국세 규모는 2015년 2조 1,719억원, 2016년 9조 7,512억원, 2017년 14조 6,677억원, 2018년 26조 7,900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연속 다음 연도에 세계잉여금 처리를 통하여 정산되었으며, 그 규모도 2017년 1조 8,725억원, 2018년 2조 9,121억원, 2019년 5조 2,817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본예산을 2월말에 시·도교육청에 확정 통보한 이후, 정산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4~5월 중에 시·도교육청으로 추가 교부하기 때문에¹⁶⁾ 이러한 추계오차의 증가로 인한 정산분의 증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예측가능한 배분에 영향을 주어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자금 집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¹⁷⁾

16) 반면, 내국세액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적을 경우 다다음연도 교부금 본예산에 반영되므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배분액이 연도 중에 변경되지 않는다.

17) 국회는 국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재정운용의 근간이자 출발점으로, 세입추계의 오차가 커짐에 따라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조정과 관련하여 세수오차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세전망의 정확성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잉여금 정산분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보고가 필요하다.¹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¹⁹⁾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본예산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으며 세계잉여금 정산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산분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직접 교부하고 교육부 예·결산에 정산분 교부금이 계상되지 않고 있어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2017년부터 정산분 배분기준을 본예산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등 정산분 교부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추가재원(정산분, 추경예산)의 시·도교육청 배분기준을 기존 “보통교부금 본예산 확정교부 비율”에서 2017년 당해 연도 본예산 배분 시 결정되었던 “학교, 학급, 학생 측정단위 합계 비율”로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2조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세계잉여금 정산분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배분금액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한 평가 및 원인 분석, 개선사항을 포함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9. 4. 5. 의결(4. 23. 시행)하였다.

18) 본 분석내용은 추경예산에도 해당한다.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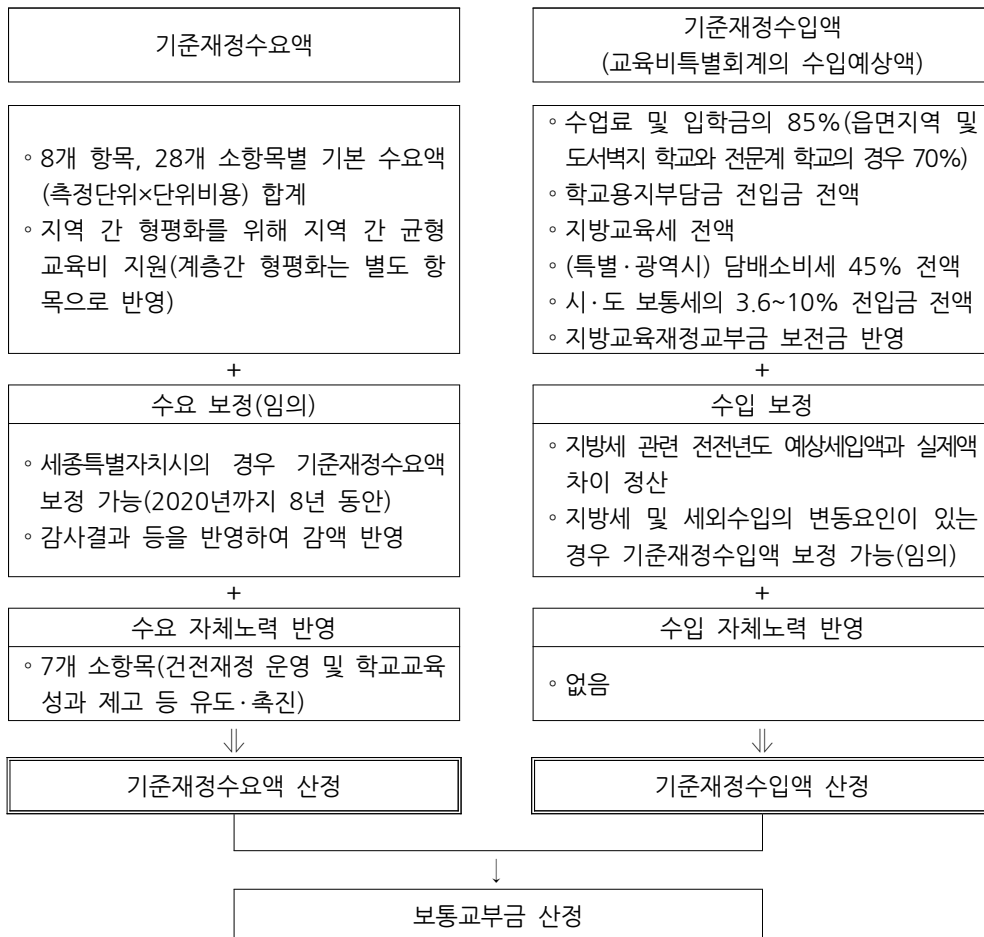
제12조(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보통교부금 자체노력 수요 항목의 합리적인 운영 필요

가. 현 황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별 재정여건의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부족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한다.

[보통교부금 산정 흐름]



기준재정수요액 중 자체노력 반영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며,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등 7개 소항목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이 지출을 줄이거나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노력 반영 항목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2018년 자체노력 수요액은 총 4,910억원이다. 이 중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의 수요반영액은 225억원이며, 이는 자체 재정 절감을 통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상환한 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지원한 것이다.

[2018년 자체노력 수요]

항목	내용	(단위: 억원)
		수요반영액
학교·학급 통폐합 지원	학교 통폐합 인센티브, 신설대체 인센티브, 통합 운영학교 반영	3,263
학교신설민관협력 확대	교육청이 민간으로부터 학교 신증설 및 개축에 소요되는 재원을 유치한 경우 노력도를 인정하여 인센티브 산정	265
자사고 지정에 따른 공립일반고 지원	자율형 사립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지정으로 절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58
외부 교육투자 유치	일반지자체로부터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비법정이전수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반영	293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교육청이 자체 재정 절감을 통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한 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지원	225
중등직업교육 학생비중 확대 지원	중등 직업교육 비중 확대 추진에 따라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유도 및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강화 지원	597
자사고·사립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지원	자율형 사립고, 사립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촉진 및 안정적인 전환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년간 3교 단계적 지원	9
합 계		4,91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재정 절감이 아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²⁰⁾에 따르면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교육부는 2017년부터 ‘지방채 조기상환 지원’ 항목을 자체노력 항목에 추가하였다. 동 항목은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조기에 상환한 금액의 2.5%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서,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지방채 증권 또는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지방교육채 발행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부담 교육채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 운영 및 학교교육 성과 제고 등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하고,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은 물가 또는 측정단위가 급격히 증감하는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를 보정할 수 있다.

④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별 산정공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부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때에는 보통교부금의 재원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의 미달액의 총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정한다

21)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

(원금+이자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이며, 2013년부터는 교부금부담 교육채만 발행하였다. 교부금부담 교육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액이 확대되었으므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위해 조기에 상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 지방교육채 규모]

(단위: 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행		9,583	38,023	61,271	31,529	11,661	3,359
상환	원금	353	20,484	1,144	4,061	25,154	42,403
	이자	976	1,483	1,438	2,622	2,928	2,568
	계	1,329	21,967	2,582	6,683	28,082	44,971
잔액		29,429	46,968	107,096	134,564	121,071	82,027

자료: 교육부

그러나 인센티브 체계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아 결국 조기상환이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이 기존 교육채를 조기에 상환하면서 교육채를 신규로 발행하였는데, 신규 발행한 교육채의 이자율이 조기 상환한 교육채의 이자율 보다 더 높은 교육청이 다수 발생(2017년 7개 교육청, 2018년 5개 교육청)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신규 발행한 교육채의 이자율과 조기 상환한 교육채의 이자율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교육청에 대해 자체노력 인센티브(2017년 118억원, 2018년 93억원)를 지원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1,123억원을 2.27~2.87%에 상환하고 657억원을 3.20% 이자율로 신규 발행하였으며, 조기상환에 대해 2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다.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및 신규발행 현황]

(단위: 억원, %)

시·도 교육청		조기상환			신규발행	
		조기 상환액	조기상환 지방채 이자율(%) ¹⁾	조기상환 인센티브	발행액	이자율
2017	광주	191	13년 금융채: 2.70	4.8	38	2.76
			14년 금융채: 2.69			
	대전	265	14년 금융채: 2.69	6.6	213	2.76
			14년 금융채: 2.59			
			15년 금융채: 2.62			
	경기	552	13년 금융채: 2.42	14	1,233	2.82
	강원	1,606	13년 금융채: 2.55	40	401	2.87
			14년 금융채: 2.69			
			14년 금융채: 2.55			
			15년 금융채: 2.52			
	전남	300	14년 금융채: 2.69	7.5	555	2.93
	경북	1,095	15년 금융채: 2.47	27	596	2.73
	경남	705	13년 금융채: 2.31	18	573	2.68
			14년 금융채: 2.69			
			14년 금융채: 2.33			
2018	부산	1,123	15년 공자기금: 2.27	28	657	3.20
			15년 금융채: 2.66			
			17년 금융채: 2.87			
	대구	584	14년 금융채: 2.99	15	365	2.67
			15년 금융채: 2.57			
	광주	97	13년 금융채: 2.90	2	150	3.02
			14년 금융채: 2.99			
	충북	507	15년 공자기금: 2.27	13	311	3.15
	충남	1,388	14년 금융채: 2.76	35	395	2.97
			14년 금융채: 2.7			
			15년 금융채: 2.75			

주: 1) 조기상환 지방채 이자율은 실제 상환 당시 이자율로 기재
자료: 교육부

이는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을 결정하고 교육부가 지방채 신규발행을 결정하는 등 의사결정이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고, 교육부는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급 시 조기상환에 대해서만 지급할 뿐 조기상환 이자율까지 검토하지 않으며, 시·

도교육청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모두 교부금부담 지방채이므로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자율에 관계없이 조기상환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 체계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자비용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1-4.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교부·운용 기준 정비 필요

가. 현 황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 등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로 산정되기 어려운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60%,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30%,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0%의 비중으로 배분되고 있다. 이 중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교부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18.1.1. 시행)²²⁾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재난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재정운영 평가 결과 인센티브가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총 1,503억원이 교부되었으며, 구체적으로 포항여진 피해학교 시설복구에 8억원, 신규 도입된 재해예방 사업에 1,495억원이 교부되었다.

2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교부일	금액	교부 내용
포항여진 피해학교 시설복구	2018.3.21.	751	포항여진 피해학교 지원
재해예방 1차	2018.3.29.	71,101	내진보강비를 17개 시·도교육청에 대상학교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
재해예방 2차	2018.9.27.	50,001	- 289억원은 당초 계획된 지진발생 위험지역 (영남권역) 중심으로 우선 배정 - 211억원은 지진위험 외 12개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대상학교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
재해예방 3차	2018.12.6.	28,442	- 17개 시·도교육청의 보유율에 따라 교부하되, 지역별 총액 범위 내에서 내진보강 및 기타 재 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비로 집행 ※ 기타 재해예방: 지진에 따른 체육관·강당 조명장치 추락 방지를 위한 보강 등, 옹벽 보수, 경사·절개지 보강, 담장보수 보강(울타 리, 배수로 설치하는 제외) 등 천재지변에 대비 한 보수·보강
합계		150,295	-

주: 세계잉여금 정산분 포함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가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등 시·도교육청에 내진보강 예산을 과다 교부하여 이월액이 크게 발생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시·도교육청에 1,503억원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교부 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은 446억원(29.7%)을 집행하고 1,057억원(70.3%)을 이월하였 다. 시·도교육청별로 집행실적에 편차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집행실적이 부 진하였으며, 울산교육청의 경우 교부예산 전액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실적이 가장 좋 은 전남교육청의 경우도 63.6%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2018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이월률
서울	19,596	2,379	17,217	12.1	87.9
부산	12,024	901	11,123	7.5	92.5
대구	10,131	3,338	6,793	32.9	67.1
인천	6,294	2,173	4,121	34.5	65.5
광주	4,217	2,560	1,657	60.7	39.3
대전	6,418	1,097	5,321	17.1	82.9
울산	3,687	0	3,687	0.0	100.0
세종	92	51	41	55.4	44.6
경기	24,456	11,257	13,199	46.0	54.0
강원	7,292	2,968	4,324	40.7	59.3
충북	4,231	343	3,888	8.1	91.9
충남	6,383	1,974	4,409	30.9	69.1
전북	7,480	3,682	3,798	49.2	50.8
전남	7,656	4,872	2,784	63.6	36.4
경북	13,704	3,123	10,581	22.8	77.2
경남	14,658	3,726	10,932	25.4	74.6
제주	1,976	181	1,795	9.2	90.8
합계	150,295	44,625	105,670	29.7	70.3

자료: 교육부

2016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반영되는 내진보강 예산²³⁾이 사업 초기과정에서 추진이 지연되어 적체현상이 발생²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2018년 특별교부금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보강에 한정하여 운영하면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²⁵⁾ 교육부는 내진보강을 2034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보통교부금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29년까지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18년 특별교부금을 추

23) 보통교부금에 반영된 내진보강 예산 2016년 500억원 → 2017년 1,000억원 → 2018년 1,700억원 → 2019년 2,500억원

24) 내진보강 사업이 적체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최종 집행 완료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이후 내진성능평가에 4개월, 내진설계에 3개월, 공사발주 및 공사에 2개월이 소요(총 9개월)된다.

25) 다만, 교육부는 재해예방 3차 교부(2018. 12. 6.) 시에 내진보강 이외에 기타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비로 집행 가능하도록 추가하였다.

가로 교부하였으며, 향후 매년 보통교부금 2,500억원 및 특별교부금 1,000억원을 내진보강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향후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위한 목표량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하향식 배분구조(Top down)로 운영한 결과, 각 학교가 집행 가능한 것보다 과다한 물량을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육부는 2018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03억원 중 8억원을 시설복구에 지원하고 나머지 1,495억원을 재해예방 사업에 교부하여 소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과 달리 지방교부세의 교부 운용 기준에 재난안전수요 항목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수요는 지역현안수요 사업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운용 지침에는 중복지원 관리, 교부기준, 심사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운용 기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교부신청	사전에 해당 사업이 지역현안수요 인지, 재난안전수요인지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 후 신청 ※ 예산 및 재난안전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사업의 중복 여부 (사업명은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를 반드시 최종 확인하여 신청 ※ 행정안전부는 중복 교부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간 정보공유 추진
교부기준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등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	- 응급복구 사업 - 항구복구 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재난안전수요
심사교부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선정 - 사업의 효율성 및 국민안전체감도, 자치단체 재정여건, 자치단체간 형평성, 안전문화 확산, 재난관리기금 운용, 재난관리평가결과 및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유인기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재난예방사업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재난예방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심사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중복 추진되고 있는 내진보강 사업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고 재해예방 수요를 내진 보강에서 화재, 미세먼지 등 다양한 수요로 확대하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및 시·도교육청에서 수요, 지방비 확보 계획 등에 따라 신청하도록 신청방법을 마련하며, 지역현안수요와 중복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등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분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¹⁾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의 2018년도 예산현액 4조 428억원 중 4조 398억원을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장학재단²⁾에 사업출연금(350-02)으로 교부하였으며, 29억원을 불용 처리하였다.

[2018회계연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5,772	4,042,786	-	-	4,042,786	4,039,848 (4,012,671)	-	2,938
국가장학금 지원	3,684,541	3,684,541	-	-	3,684,541	3,681,603 (3,679,337)	-	2,938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262,939	273,930	-	-	273,930	273,930 (273,154)	-	-
우수학생 국가 장학금 지원	19,688	19,688	-	-	19,688	19,688 (18,358)	-	-
중소기업취업 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28,604	64,627	-	-	64,627	64,627 (41,822)	-	-

자료: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

2)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2009년 5월 7일)된 교육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내역사업별 2018년 예산액 현황]

세부사업	예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조 427억 8,600만원
국가장학금 지원	3조 6,845억 4,100만원 -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 3조 4,216억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 2,600억원 - 사업운영비 : 29억 4,100만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2,739억 3,000만원 - 근로장학금 : 2,530억 1,600만원 + 추경 109억 9,100만원 - 다문화·탈북 멘토링 : 67억 5,000만원 - 사업운영비 : 31억 7,300만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96억 8,800만원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사회계) : 129억 8,800만원 - 우수장학생(예체능계) : 22억 4,000만원 - 드림장학생 : 39억 5,300만원 - 사업운영비 : 5억 700만원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장학금	646억 2,700만원 - 희망사다리 I 유형(취업연계) : 280억 8,000만원 + 추경 70억 2,000만원 - 추경 희망사다리 II 유형(고졸 후학습자) : 288억원 - 사업운영비 : 5억 2,400만원 + 추경 2억 300만원

주: 예산현액 기준

자료: 교육부

2-1. 국가장학금의 지출 증가를 고려한 정책목표 수립 필요

가. 현 황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 장학금 정책으로 2008년에는 ‘미래드림’(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09년에는 ‘희망드림’(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도입한 후 2011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2012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통합하였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인 I유형과 다자녀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인 II유형, 취업연계형인 대학생 근로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수준별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II유형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교내 장학금 유치 실적 등 대학의 자체노력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과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014년에 신설된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8구간 이하의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제도로써, 2018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첫째, 둘째 자녀에게도 지원하고 있다. 소득별로 기초~3분위 이하는 연 520만원 이내, 4~8분위는 연 450만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

소득구간	국가장학금(3조 6,845억원)			대학자체 노력
	I 유형 (2조 9,416억원)	다자녀 (2,629억원)	II 유형 (4,800억원)	
기초·차상위				
1구간	520만원	520만원	4,000억원 (대학연계 지원 및 입학금 감축분 지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
2구간				
3구간				
4구간	390만원			
5구간	368만원			
6구간		450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5만원			

주: 예산현액 기준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국가장학금의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에 있어 적정수준의 정책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정부의 장학금 정책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은 고등교육 예산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2011~2018년 동안 연평균 31.1%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 12.4%보다 18.7%p 높은 수준이다. 또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고등교육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3.5%에서 2018년 39.6%로 상승하였다.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추이]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증가율
고등교육	44,976	61,222	61,541	85,926	109,192	97,140	99,852	101,933	12.4
맞춤형 국가장학금	6,061	19,240	27,861	35,476	38,456	38,946	39,333	40,398	31.1
비중	13.5	31.4	45.3	41.3	35.2	40.1	39.4	39.6	
학자금대출	609	635	152	819	1,276	710	1,020	831	4.5
비중	1.4	1.0	0.2	1.0	1.2	0.7	1.0	0.8	
국립대지원	22,036	22,568	19,700	23,958	39,195	23,571	24,868	25,561	2.1
비중	49.0	36.9	32.0	27.9	35.9	24.3	24.9	25.1	
기타	16,270	18,779	13,828	25,673	30,265	33,913	34,631	35,143	11.6
비중	36.2	30.7	22.5	29.9	27.7	34.9	34.7	34.5	

주: 1. 비중은 전체 고등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 기타는 BK21플러스 사업, 사회수요 맞춤형인재양성 등 대학교육 역량강화, 인문사회 기초연구(R&D) 등 학술연구 역량강화 포함

자료: 교육부

이는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2012년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도입된 이후 소득연계형인 I유형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2012년 도입 당시 1분위 지원액이 225만원이고 3분위까지 90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18년에는 1~3분위 지원액이 520만원, 8분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수준]

(단위: 만원)

구분	2012			2017		2018	
	소득수준		지원액	소득수준	지원액	소득수준	지원액
	1학기	2학기					
1분위	122	127	225	중위소득 30%(~134만원)	520	중위소득 30%(~136만원)	520
2분위	189	197	135	중위소득 70%(~313만원)	520	중위소득 50%(~226만원)	520
3분위	245	255	90	중위소득 90%(~402만원)	390	중위소득 70%(~316만원)	520
4분위	294	305	-	중위소득 110%(~491만원)	286	중위소득 90%(~407만원)	390
5분위	341	354	-	중위소득 130%(~581만원)	168	중위소득 100%(~452만원)	368
6분위	391	405	-	중위소득 155%(~692만원)	120	중위소득 120%(~542만원)	368
7분위	448	463	-	중위소득 180%(~804만원)	67.5	중위소득 150%(~678만원)	120
8분위	526	546	-	중위소득 220%(~983만원)	67.5	중위소득 200%(~904만원)	67.5

주: 1. 소득수준은 4인가구 기준이며, 가구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됨

2. 2015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혜자의 금융자산 등을 소득에 반영

자료: 교육부

향후에도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고, 제약된 재정여건 하에서 국가장학금의 규모가 고등교육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경우 다른 고등교육 사업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중산층, 반값등록금 등 다소 모호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액이 빈번히 변경될 수 있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2012년 반값등록금의 목표를 등록금 총액의 절반을 지원(대학자 체노력분 포함)하는 것으로 수립하였고, 2015년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 노력(3.1조원)으로 7조원을 마련하여 20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2016~2017년 동안은 2015년 달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 반값등록금의 목표를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368만원)’으로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여, 2018년 6분위(중위소득 120%, 542만원)까지 368만원으로 지원단가를 인상하였다.³⁾ 또한 향

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2017년 대비)하여, 수혜자 확대, 소득구간별 단가 인상 등 정책 체감도 제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19년 6구간 중산층(중위소득 130%)까지 반값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7~8구간 이하 단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향후 대학등록금 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자동적으로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국공립대의 명목등록금이 2000년 219만원에서 2011년 435만원으로, 사립대의 명목등록금이 2000년 451만원에서 2011년 769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대학의 노력으로 대학등록금 수준이 2012년 이후 정체되어 있다.

[대학등록금 추이: 2000~2018년]

(단위: 만원)

	2000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국공립	219	312	417	419	431	435	411	409	412	413	415
사립	451	607	738	741	753	769	739	734	736	740	743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령인구 감소, 실제 등록금 추이 등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재정의 바람직한 투자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에 있어 적정수준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2017년에 비해 중위소득 90%~120%의 지원단가가 168만원~286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2. 국가장학금 지원의 합리적인 집행 필요

가. 현 황

맞춤형 국가장학금의 내역사업인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인 I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대학연계지원형인 II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분석의견⁴⁾

첫째, 국가장학금 I유형은 학령인구 감소로 연례적으로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의 집행실적을 보면, 2016년부터 I유형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다른 내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하고 있다. I유형의 불용 규모가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5%, 2017년 7.4%, 2018년 22.4%로 상승하였으며, I유형에서 II유형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예산 규모는 2016년 709억원, 2017년 2,138억원, 2018년 1,575억원이다.⁵⁾

[국가장학금 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불용액(B)	전환집행(C)	B/A	C/A
2016	합계	3,654,595	3,604,595	50,000	-	1.4	-
	국가장학금 I 유형	2,891,700	2,820,800	70,900	-	2.5	-
	국가장학금 II 유형	500,000	582,100	-	82,100	-	16.4
	다자녀장학금	260,000	198,800	61,200	-	23.5	-
	사업운영비	2,895	2,895	-	-	-	-

4) 본 분석은 감사원 감사보고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2018. 11.)를 일부 참조하였다.

5) 다만, 국가장학금 I유형을 다자녀장학금으로 전환 집행(4,995억원)한 것은 2018년부터 다자녀장학금 수혜 대상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에서 첫째, 둘째 자녀까지 확대되면서 기존에서 I유형으로 분류되었던 인원 및 예산을 다자녀 장학금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	불용액(B)	전환집행(C)	B/A	C/A
2017	합계	3,634,621	3,612,097	22,524	-	0.6	-
	국가장학금 I 유형	2,891,700	2,677,919	213,781	-	7.4	-
	국가장학금 II 유형	480,000	701,455	-	221,455	-	46.1
	다자녀장학금	260,000	229,802	30,198	-	11.6	-
	사업운영비	2,921	2,921	-	-	-	-
2018	합계	3,684,541	3,681,603	2,938	-	0.1	-
	국가장학금 I 유형	2,941,600	2,281,625	659,975	-	22.4	-
	국가장학금 II 유형	480,000	637,500	-	157,500	-	32.8
	다자녀장학금	260,000	759,537	-	499,537	-	192.1
	사업운영비	2,941	2,941	-	-	-	-

자료: 교육부

대학생 수 감소 등으로 국가장학금 집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지급된 전년도 국가장학금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별 예산액 및 전년도 예산집행 상황, 적정 소득분위별 경곤통, 지급단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교졸업자수는 2012년 63.7만명에서 2018년 56.7만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대학진학률도 동기간 71.3%에서 69.7%로 하락한 결과, 대학생수는 2012년 234만명에서 2018년 217만명으로 감소하였다.

[고교졸업자 수 및 대학진학률 추이]

(단위: 천명,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교졸업자수	637	631	633	615	608	584	567
대학진학률	71.3	70.7	70.9	70.8	69.8	68.9	69.7
대학생수	2,340	2,340	2,337	2,303	2,247	2,195	2,179

주: 1.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활용 데이터

2. 대학진학률: 진학자(국내·외 대학 포함) / 졸업자 * 100

3. 대학생 수: 휴학자, 대학원생 제외

자료: 교육부, 감사원 감사보고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2018. 11.) 61쪽의 표를 업로드

또한 소득8분위 경계값이 매년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감소하여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자수는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소득8분위 경계값 인하 뿐만 아니라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대상 확대⁶⁾로 수혜자수가 전년대비 19만명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산 편성 시에 고려하지 못하였다.⁷⁾

[연도별 소득 8분위 경계값 변동 및 수혜자 수 현황]

(단위: 만원, 만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득8분위경계값	563	584	854	968	983	904
국가장학금I유형수혜자수	117	118	105	106	102	83

자료: 교육부, 감사원 감사보고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2018. 11.) 61쪽의 표를 업
데이트

따라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예산 편성 시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하여 I유형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유형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I유형에서 II유형으로 전환 집행한 예산은 2016년 709억원, 2017년 2,138억원, 2018년 1,575억원 규모이다. 2018년 II유형으로 전환 집행한 예산 1,575억원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등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러나 I유형의 사업목적은 저소득층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II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I유형을 II유형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저소득층은 시기적으로 I유형, 다자녀,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먼저 지원받기 때문에⁸⁾ 구조적

6) 2017년까지 셋째 이상 재학생에게만 다자녀장학금을 지원하였으나, 2018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자녀(88년생 이후) 모두에게 지원하며, 기초·차상위계층 및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은 520만원, 4~8구간(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은 450만원을 지원한다.

7) 2018년 국가장학금 I유형 감소자 19만명 중 14.7만명은 다자녀 장학금 대상 확대에 따른 감소인원이다.

8) 2018년 국가장학금(I유형, 다자녀, II유형, 지방인재), 우수장학금,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을 통한

으로 II유형은 상위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으며, I유형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9~10분위에도 지원되었다. 2018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의 7분위 지원 비중은 16.3%, 8분위 지원비중은 19.9%이며, I유형의 지원대상이 아닌 9~10분위 지원 비중도 3.1%이다. 특히 2016~2018년 동안 7분위 지원 비중은 8.4%에서 16.3%로 상승하였으며, 8분위 지원 비중은 동기간 10.1%에서 19.9%로 상승하였으며, 9~10분위 비중은 동기간 2.5%에서 3.1%로 상승하였다.

[국가장학금 I, II유형별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총액 비율]

(단위: 억원, %)

	2016				2017				2018			
	I유형		II유형		I유형		II유형		I유형		II유형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지급액	비율
기초	2,143	7.6	140	2.7	2,095	7.9	150	2.5	1,735	7.6	133	2.8
차상위	1,924	6.8	159	3.1	1,986	7.5	186	3.1	1,682	7.4	175	3.7
1분위	7,256	25.8	694	13.6	6,049	22.7	617	10.1	4,804	21.1	538	11.3
2분위	8,180	29.0	761	14.9	8,850	33.2	902	14.8	3,757	16.5	413	8.7
3분위	3,824	13.6	712	14.0	2,862	10.7	642	10.6	3,697	16.2	409	8.6
4분위	2,096	7.4	549	10.8	1,959	7.4	730	12.0	2,398	10.5	514	10.8
5분위	1,068	3.8	529	10.4	1,056	4.0	693	11.4	1,082	4.7	252	5.3
6분위	746	2.6	487	9.5	845	3.2	743	12.2	2,082	9.1	452	9.5
7분위	429	1.5	428	8.4	410	1.5	560	9.2	882	3.9	771	16.3
8분위	513	1.8	516	10.1	519	1.9	631	10.4	682	3.0	942	19.9
9~10분위	0	0	128	2.5	0	0	230	3.8	0	0	145	3.1
합계	28,178	100	5,103	100	26,632	100	6,083	100.0	22,802	100	4,744	100

주: II유형은 대학연계 지원금이며, 입학금 지원(835억원)과 지역인재 장학금(800억원)을 포함하지 않음

자료: 교육부

소득계층별 국가장학금 지원은 국가장학금 I유형 내에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I유형을 II유형으로 전환하여 대학이 재량으로 지원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I유형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97.8%, 차상위 96.1%, 1분위 96.1%, 2분위 95.7%, 3분위 94.9%, 4분위 87.5%, 5분위 84.9%, 6분위 82.4%, 7분위 61.8%, 8분위 53.7%이다.

장학금 I 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3구간까지 지원단가(520만원)는 대학과 무관하게 5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간등록금이 이보다 더 높은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유형을 II유형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는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국가장학금 I 유형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전환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집행을 및 청년지원 실적 저조

가. 현 황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내역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재학생 학비부담 경감 및 대졸자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육부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2018년도 예산현액 646억원을 집행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 전액 교부하였다.

[2018회계연도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장학금 지원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전용	예비비	예산	집행액	다음연도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이월액	등		현액		이월액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28,604	64,627	0	0	0	64,627	64,627	0	0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0	29,000	0	0	0	29,000	29,000	0	0

주: 집행액은 한국장학재단 교부액

자료: 교육부

동 사업 중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은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으로 추경에 신규 도입(290억원)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⁹⁾

9)

구분	내용
지원대상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 연령제한 없음, 고등학교 졸업자(단 전문대졸 이상 제외),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100점 만점, 재학생만 해당)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단, 2018년 대학 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E등급 지원 제한
지원금액	신청 학기별 등록금 전액(계절학기 제외),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추경으로 편성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실행률이 22.8%로 저조하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2018년 9,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인원은 4,014명(44.6%)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예산 288억원 중 66억원(22.9%)만이 집행되고 222억원이 불용되었다.

[2018회계연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집행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분	계획		실적			
	지원 인원	예산	지원 인원	집행률	예산	집행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 II)	9,000	288	4,014	44.6	66	22.9

주: 사업운영비 제외

자료: 교육부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먼저, 동 사업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 3년 이상 재직경력¹⁰⁾이 있는 학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졸 후 대기업, 비영리기관 등에 재직 중인 학생과 재직경력이 3년 미만인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 9,626명중 4,662명이 탈락하였으며, 탈락한 사유는 기업규모 미충족이 54.6%, 재직기간 미충족이 29.2%로 대부분(83.8%)을 차지하였다.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합격 현황]

(단위: 명, %)

구분	신청((A))	선발			최종지급 ¹⁾
		불합격	합격(B)	합격률(B/A)	
인원	9,626	4,662	4,964	51.6	4,014

주: 1) 선발 후 타장학금 수혜(지급금액 0원) 등으로 950명 제외

자료: 교육부

10) 전 직장 경력은 기업규모와 무관하며,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재직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불합격자의 탈락사유]

(단위: 명, %)

구분	기업규모 미충족 ¹⁾	재직기간 미충족	성적미달 등	학적 미충족	기 학사 보유	기타	합계
인원	2,545	1,363	291	244	151	68	4,662
비율	54.6	29.2	6.2	5.2	3.2	1.5	100.0

주: 1) 비영리법인, 대기업 근무 등
자료: 교육부

다음으로, 교육부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지원단가를 연평균 등록금 640만원(한학기당 320만원)으로 가정하여 2018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 결과 등록금 수준이 이보다 낮은 사이버대(253만원), 방통대(75만원), 전문대(593만원) 재학생의 비중이 높아 불용이 발생하였다.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 지원자의 대학 유형별 현황]

학제별		신청인원(명)	지원인원(명)	연평균 등록금(천원)	지원금액(백만원)
4년제		3,955	1,848	6,680	3,742
전문대		2,988	1,127	5,926	1,949
원격	사이버	2,023	768	2,530	831
	방통	660	271	754	108
	소계	2,683	1,039	1,241	939
합 계		9,626	4,014	-	6,630

자료: 교육부

따라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취지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보다 많은 후학습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인원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청년 일자리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도입하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사업의 지원자 연령을 보면 정부가 지원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만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까지)은 2,829명으로 전체 지원자(4,014명) 대비 70.5%에 해당한다. 반면 청년층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는 29.5%이며, 50세 이상도 8.5%에 이르고 있다.

[2018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자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령구분	남자	여자	합계	연령별 비중
만 20세 이상~30세 미만	1,057	1,240	2,297	57.2
만 30세 이상~40세 미만	476	255	731	18.2
(30세 이상~34세 이하)	259	111	370	9.2
(35세 이상~39세 이하)	217(162 ¹⁾)	144	361	9.0
만 40세 이상~50세 미만	316	329	645	16.1
만 50세 이상~60세 미만	153	151	304	7.6
만 60세 이상	30	7	37	0.9
합 계	2,032	1,982	4,014	100.0

주: 1) 35세 이상~39세 이하 남성 중 군필자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청년을 우선지원순위에 두었지만 청년 지원인원이 부족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였다는 설명이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지원은 청년, 직업계고 졸업자, 위탁과정 졸업, 저학년, 장기재직자, 성적 우수자 순으로 이루어졌다.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우선지원순위]

지원순서	우선 지원기준	기준 상세
1	청년	19세 이상~34세 이하 ※(예외인정) ① 35세 이상~39세 이하 중 군필자 ②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연령에서 1년 차감)
2	직업계고 졸업자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3	위탁과정 졸업	일반계고에 진학하였으나, 위탁과정 이수하여 졸업한 자
4	저학년	학년이 낮은 학생
5	장기재직자	재직기간이 긴 학생
6	성적 우수자	총 평균백분위 점수가 높은 학생

자료: 교육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취지가 청년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층이 아닌 지원자의 비중이 29.5%라는 것은 당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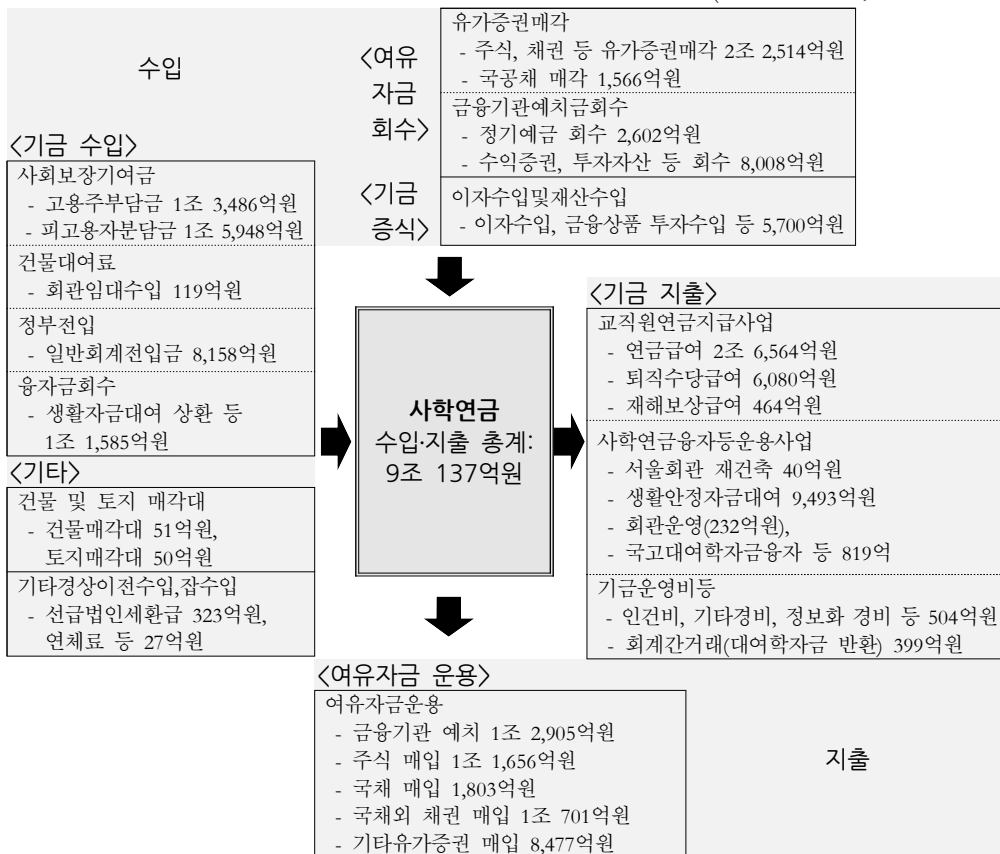
따라서 교육부는 동사업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통해 청년 고용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청년 위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기금”이라 한다)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애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적립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사학연금기금의 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피고용주분담금), 관유물대여료, 금융상품 투자·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생활안정자금대여, 기금관리비, 여유자금운용 등으로 구성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수입지출 구조 흐름도]

(2018년도 수납, 지출액 기준)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3-1. 사학연금 기금운용의 수익률 저조 및 전문성 부족

가. 현 황

사학연금기금은 급여 충당을 위한 책임준비금¹⁾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기금을 금융기관 예금, 유가증권 매입,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

2018년 기준 사학연금기금 규모는 18조 5,077억원이며, 세분화하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금융자산이 15조 9,146억원(86.0%)이며,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대여가 1조 9,551억원(10.6%), 사옥운영 및 기타 자산이 6,380억원(3.4%) 규모이다.

2018년 기금운용수익률은 금융자산 △2.45%, 대여자산 3.62%, 사업용 비유동자산 △1.66%을 기록하였다. 2018년 금융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주요국 무역분쟁, 통화긴축, 부실 신흥국 신용위험 고조 등으로 인한 국내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약세가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업용비유동자산은 회관 운영사업으로 오류회관 누적 손실 규모 증가 및 매각(당초 감정가격의 54%로 매각)으로 임대수익률이 2018년 △1.66%을 기록하였다. 회관운영사업의 장기수익률도 2009~2018년 1.19%로 금융자산 5.53%, 대여자산 4.4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잉여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
4. 기금 증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018년 사학연금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장기수익률
	기금 규모	수익률	
금융자산	159,146	△2.45	1982년~2018년 5.53%
- 채권	68,712	4.76	1982년~2018년 6.04%
- 주식	57,060	△14.75	1986년~2018년 3.62%
- 대체투자	31,355	8.30	2006년~2018년 6.55%
- 현금성	2,019	1.64	2000년~2018년 3.01%
대여자산(생활자금대여)	19,551	3.62	2009년~2018년 4.42%
사옥운영	2,866	△1.66	2009년~2018년 1.19%
기타	3,514	-	-
기금 규모	185,077	△1.75	-

- 주: 1. 2018년말 규모: 장부금액 기준
 2. 유가증권 수익률: 연금기금, 채해기금 포함, 국고 제외
 3. 평잔수익률 기준(연도별 손익의 해당기간 합계 ÷ 연도별 평잔의 해당기간 합계)
 4. 기금 규모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문 외에 대여사업 대여금, 회관운영사업의 유형자산(보유 부동산) 및 유동자산(미수국가부담금, 미수금 등)이 포함되며, 국고대여사업의 자산(금융자산(채권), 국고대여금 및 유동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5. 금융부문 이외 자산 중 기타자산은 미수국가부담금, 미수금 등의 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수익률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기금의 수익률은 산정·공시하지 않으나, 기재된 전체 기금의 수익률은 운영규모 별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기재함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의 경우 2018년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2018년 공적연금은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금융자산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국민연금 △0.93%, 공무원연금 △1.7%, 군인연금 △2.06%, 사학연금 △2.45% 순으로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이는 각 자산별 수익률 수준은 유사하지만 자산 배분에서 사학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내주식 투자가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군인연금 0%, 국민연금 17.1%, 공무원연금 19.3%, 사학연금 21.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공적연금 운용현황]

(단위: 십억원, %)

구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
금융자산	638,217 (100.0)	△0.93	15,915 (100.0)	△2.45	8,827 (100.0)	△1.7	988 (100.0)	△2.06
국내주식	108,914 (17.1)	△16.77	3,439 (21.6)	△18.13	1,707 (19.3)	△17.9	-	-
해외주식	112,961 (17.7)	△6.19	2,267 (14.2)	△8.71	909 (10.3)	△7.8	-	-
국내채권	310,993 (48.7)	4.85	5,874 (36.9)	5.65	3,192 (36.2)	4.8	805 (81.5)	△1.60
해외채권	26,587 (4.2)	4.21	997 (6.3)	△0.53	460 (5.2)	△1.1	-	-
대체투자	76,620 (12.0)	11.80	3,136 (19.7)	8.30	1,515 (17.2)	8.1	30 (3.0)	△33.85
단기자금	2,143 (0.3)	2.43	202 (1.3)	1.64	104 (1.2)	1.9	154 (15.6)	1.68

주: () 안의 숫자는 비중

자료: 각 소관부처 및 공단

나. 분석의견

첫째, 사학연금 국내주식의 장기수익률이 저조하여 분산투자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중심의 자산배분에서 주식자산 등의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는 것은 위험자산은 변동성이 높지만 장기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 다변화를 통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사학연금의 경우 주식의 9년 평균 수익률(2010~2018년), 5년 평균 수익률(2014~2018년)이 채권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국내주식 수익률은 9년 평균 수익률이 2.49%로 국내채권 수익률 4.76%보다 낮은 수준이며, 5년 평균 수익률이 0.01%로 국내채권 수익률 4.07%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주식의 벤

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은 9년 평균 $\Delta 0.95\%$, 5년 평균 $\Delta 1.69\%$ 를 기록하여 시장 수익률 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국내주식 평균수익률은 전체 금융자산 수익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사학연금기금 금융부문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전체	채권			주식			대체투자			현금성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국내	해외	소계	
수익률	2018	△2.39	5.75	△0.54	4.84	△17.92	△7.66	△14.40	7.35	10.05	8.49	1.67
	2014~2018	3.37	4.07	2.69	3.93	0.01	3.97	0.97	6.22	7.52	6.63	1.81
	2010~2018	4.40	4.76	3.97	4.68	2.49	4.59	2.98	4.00	4.84	4.23	2.31
초과수익률	2018	△0.08	0.95	△1.31	0.63	△2.29	0.46	△1.53	1.4	0.35	1.34	0.12
	2014~2018	0.12	0.63	△0.97	0.49	△1.69	0.53	△1.23	1.71	2.12	1.81	0.15
	2010~2018	0.34	0.77	△0.37	0.67	△0.95	△0.94	△0.87	0.97	1.34	1.04	0.23

주: 1. 수익률 : 시간가중수익률

2. 연평균 수익률 : 기하평균수익률

3. 대체투자자산의 2010~2018년 수익률 및 초과수익률을 2013~2018년 수익률로 산정(2013년부터 대체투자 수익률 및 BM수익률 설정)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그리고 국내주식의 수익률 저조 현상은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운용 수익률이 더 저조하다. 2010~2018년 동안 직접운용 국내주식 수익률은 1.95%, 위탁운용은 2.96%이며, 초과수익률은 직접운용 $\Delta 1.65\%$, 위탁운용 $\Delta 0.54\%$ 이다.

[사학연금기금 주식 연평균 수익률]

(단위: %)

		국내주식			해외주식	
			직접	위탁		위탁
수익률	2018	△17.92	△17.59	△18.18	△7.66	△7.66
	2014~2018	0.01	△0.63	0.55	3.97	3.97
	2010~2018	2.49	1.95	2.96	4.59	4.59
초과수익률	2018	△2.29	0.02	△2.55	0.46	0.46
	2014~2018	△1.69	△2.71	△1.19	0.53	0.53
	2010~2018	△0.95	△1.65	△0.54	△0.94	△0.94

주: 1. 수익률 : 시간가중수익률

2. 연평균 수익률 : 기하평균수익률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또한 국내주식 종목선택 측면에서도 분산투자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의 요인분해는 자산배분효과와 자산 내 종목선택으로 분류되며, 공단의 국내주식의 경우 자산 내 종목선택의 마이너스(-)효과가 자산배분효과보다 강해서 초과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공급과잉 및 과도한 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각국이 구조개혁 차원에서 디레버리지 정책³⁾을 펼치면서 글로벌 경제는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고착화 되었고 양적완화 등 통화완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시장 금리하락으로 채권운용 성과는 이자수익에 자본이익까지 발생하면서 좋은 성과를 보인 반면, 주식시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기업이익 성장 둔화로 상대적으로 낮은 운용성과를 보였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은 국내주식 비중을 2005년 12.76%에서 2018년 21.45%로 확대하였다.

3) 디레버리지(de-leverage)란 부채나 차입을 뜻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없애는(de) 것, 즉 부채를 줄여 나간다는 의미이다.

4) 주식 부문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은 2011년, 2014년, 2018년에 발생하였으며, 유럽재정 위기(2011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2014년), 미·중무역 분쟁에 따른 세계 경기 불안정 증대(2018년)등의 주요 이슈가 있었다.

[사학연금기금 주식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2005	2010	2015	2018
주식전체	7,097 (12.76)	19,531 (22.00)	40,864 (32.04)	57,060 (35.59)
국내주식	7,097 (12.76)	16,999 (19.15)	30,291 (23.75)	34,388 (21.45)
- 직접	2,847 (5.12)	7,435 (8.38)	9,476 (7.43)	14,839 (9.26)
- 위탁	4,250 (7.64)	9,564 (10.77)	20,815 (16.32)	19,549 (12.19)
해외주식	0 (0.00)	2,532 (2.85)	10,573 (8.29)	22,672 (14.14)
- 위탁	0 (0.00)	2,532 (2.85)	10,573 (8.29)	22,672 (14.14)

주: ()은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따라서 사학연금은 국내주식 보다는 해외주식으로 다변화, 국내주식의 종목선택에서 전문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산투자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자산운용조직은 사학연금공단내 자금운용관리단과 리스크관리실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자산운용 인력은 자금운용단 31명, 리스크관리실 12명을 합한 총 43명이다.

[사학연금 자산운용조직]

(단위: 명)

구 분(명)	합계	단장	부서장		2~3급		4급		5~6급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자금운용관리단	1	1								
투자전략팀	6			1	2		3			
증권운용실	1		1							
채권운용팀	3		1		2					
주식운용팀	6		1			2	3			
해외증권팀	5		1		1	1	2			
대체투자실	1		1							
국내대체팀	4		1		1	1	1			
해외대체파트	4				1		3			
계(①)	31	1	6	1	7	4	12			
리스크관리실	1		1							
리스크관리파트	5				1	1	2		1	
성과평가	2						1		1	
준법감시파트	4				1			2	1	
계(②)	12		1		2	1	3	2	3	
합계(①+②)	43	1	7	1	9	5	15	2	3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운용직 43명 중 9명이 외부 자산운용 관련 전문직으로 채용된 운용직이며 34명은 공단 일반직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문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먼저, 일반직은 순환보직으로 주기적으로 부서를 옮기므로,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2018년 기준 근무 중인 자금운용관리단 내부인력(25명)⁵⁾ 중 현재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으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6명 수준이다.⁶⁾ 또한 주식운용팀의 사례를 보면, 일반직의 경우 자금운용관리단 또는 리스크관리실에서 근무한 후 자산운용과 무관한 과에서 보직을 수행하고 다시 자산운용직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리스크관리실 제외

6) 2019년 6월말 기준 현재 보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2명이다.

[일반직 자금운용 인원 재직이력사항: 주식운용팀 사례]

	근무이력
A	주식운용과(4년 9개월) → 리스크관리팀(4년 4개월) → 기획예산팀(2년 3개월) → 기획조정실(2년 8개월) → 연금기획부(6개월) → 리스크관리부(1년 1개월) → 부산지부(1년 2개월) → 전략기획팀(1년 11월) → 재무예산팀(6개월) → 해외증권팀(1년 3개월) → 주식운용팀(현재, 5개월)
B	위탁운용팀(1년 3개월) → 기획조정실(9개월) → 대외협력팀 및 정책홍보팀(1년 9개월) → 주식운용팀(3년 10개월)
C	채권운용팀(1년 4개월) → 부산지부(9개월) → 전략기획팀(1년 4개월) → 주식운용팀(2년 2개월)
D	주식운용팀(4년 3개월)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다음으로, 일반직 중 일부 자격요건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자산운용직은 투자자산운용사 등 자산운용 관련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지만,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 펀드판매 관련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가 있으며, 관련 자격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직원도 4명이다.

[펀드판매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자격증 미보유 현황]

		보유 자격증
투자전략팀	A	펀드투자상담사
	B	증권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권유대행인
증권운용실	C	자격증 없음
	D	증권투자권유대행인/펀드투자상담사
	E	증권투자상담사
	F	증권투자상담사/펀드투자상담사
	G	자격증 없음
	H	자격증 없음
	I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리스크관리실	J	자격증 없음

자료: 교육부, 사학연금공단

자산운용직은 고도의 전문성, 자격요건,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이므로 내부 일반직에 대한 자격요건, 순환배치 연장 등을 더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2.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2018년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전년 1조 4,462억원에서 1조 1,251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기금적립금 규모는 18조 4,094억원에서 18조 5,077억원으로 983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재정수지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기금운용 수익률이 저조하여 재산수입이 전년 보다 감소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증대 등에 따라 퇴직연금 지출이 증가하고 전년대비 단기재직자의 퇴직 증가로 퇴직수당급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18회계연도 사학연금기금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결 산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학 연금	수입(A)	49,905	49,110	51,839	56,636	55,447
	- 사회보장기여금	18,983	20,218	25,250	27,404	29,434
	- 운용수입	8,567	6,093	5,481	7,639	5,700
	- 기타수입	15,922	16,247	13,173	13,352	12,155
	- 국고지원	6,433	6,552	7,934	8,241	8,158
	지출(B)	38,738	42,027	40,495	42,174	44,196
	- 연금급여	23,191	26,739	27,014	29,566	33,108
	- 기타지출 등	14,824	14,586	12,895	12,040	10,584
	- 기금운영비	723	702	586	568	504
	수지(A-B)	11,167	7,083	11,344	14,462	11,251
	적립금	149,248	154,984	165,395	184,094	185,077

자료: 사학연금공단

나. 분석의견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재정전망이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은 201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보험료율을 인상(기준소득월액의 7→9%)하고 연금지급률을 인하(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1.7%) 하였다. 이를 반영한 2016년 사학연금 재정계산 결과, 사학연금 재정수지는 2035년에 재정수지 적자에 도달하고 2051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부담금 수입에서 급여 지출을 뺀 연금수지는 2024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여, 이후에는 기금 운용수익으로만 적립금을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 재정수지 전망]

(단위: 억원, 명목가격)

연도	총수입 (A)	부담금 (A')	운용 수입	총지출 (B)	급여 (B')	운영비	연금 수지 (B'-A')	재정 수지 (B-A)	기금액
2019	43,871	34,925	8,946	30,358	29,717	641	5,208	13,513	205,765
2020	46,953	37,389	9,564	33,017	32,331	686	5,058	13,936	219,701
2021	49,500	39,105	10,395	36,102	35,385	717	3,720	13,398	233,099
2022	51,859	40,871	10,988	39,413	38,664	749	2,207	12,446	245,545
2023	54,232	42,697	11,535	42,920	42,137	783	560	11,312	256,857
2024	56,704	44,675	12,029	46,527	45,708	819	-1,033	10,177	267,034
2025	58,860	46,652	12,208	49,982	49,126	856	-2,474	8,878	275,912
2035	82,692	70,800	11,892	83,605	82,307	1,298	-11,507	-913	309,767
2036	85,137	73,594	11,543	87,213	85,864	1,349	-12,270	-2,076	307,691
2051	118,842	118,842	0	174,077	171,898	2,179	-53,056	-55,235	0

자료: 교육부 및 사학연금공단

따라서 사학연금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학연금 재정계산은 재정전망만 담고 있을 뿐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계산 결과와 함께 사학연금 장기 재정안정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급여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등 다른 재정안정화 조치 없이 보험료율 인상만 전제하는 것이라 실현되기 어려운 대안이다.⁷⁾

이는 사학연금 재정계산이 「사학연금법」 제43조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정계산이 장기재정균형을 위해 급여 수준과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가 아니라, 비용 부담의 원칙 취지로 규정되어 있어 급여에 드는 비용을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⁹⁾에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위해 재정계산을 실시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학연금 재정계산 시 사학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적정부담-급여체계 대한 대안과 장기재정목표와 연계된 수익률 설정, 수익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¹⁰⁾

7) 최종추계년도 (2084년) 기준 일정한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을 추정한다. 재정목표는 추계최종년도 적립배율(기금액/지출액) 2배, 추계기간동안 재정흑자 유지, 일정 적립배율 유지의 3가지이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비용 부담의 원칙) 급여나 그 밖에 이 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그 비용의 예상액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9)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調整)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10) 다만, 「사학연금법」 제42조에서 급여의 종류, 사유, 급여액 등 급여 제반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이 독자적인 재정안정화 방안 제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과의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교육급여 수급자 감소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교육급여¹⁾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에게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 학용품비(중·고), 부교재비(초·중·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2018년도 예산현액 1,312억 4,400만원 중 1,06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49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교육급여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교육급여	131,244	131,244	0	0	0	131,244	106,261	0	24,983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수급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예산 추계의 측면에서만 대응하고 있다.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된 이후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2016년 77.0%, 2017년 74.6%, 2018년 81.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교육급여 집행실적]

(단위: 천명, 백만원, %)

	2016			2017			2018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결산 (B)	집행률 (B/A)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지원 인원수	678	401	59.1	432	352	81.5	378	326	86.2
금액	144,646	111,339	77.0	127,576	95,161	74.6	130,604	105,732	81.0

주: 시·도교육청(자치단체경상보조) 실집행액, 2018년은 교부액 기준

자료: 교육부

이는 교육급여 수급자수 감소율이 전체 학생수 감소율 보다 더 크기 때문이며, 2018년 전체 학생수 감소율은 2.0%이며 수급자수 감소율은 이보다 5.2%p 높은 7.0%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학생수에서 교육급여 수급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8%, 2017년 6.1%, 2018년 5.8%로 감소하였다.

[교육급여 수급자수 및 전체 학생 수 추이: 2015~2018년]

(단위: 명, %)

기준	교육급여 수급자수(A)				전체학생수(B)				비중(A/B)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2015	2016	2017	2018
초	129,295	135,395	119,935	115,297	2,714,610	2,672,843	2,674,227	2,711,385	4.8	5.1	4.5	4.3
증가율		5.0	△11.0	△4.0		△2.0	0.0	1.0				
중	106,232	102,706	88,594	80,934	1,585,951	1,457,490	1,381,334	1,334,288	6.7	7.0	6.4	6.1
증가율		△3.0	△14.0	△9.0		△8.0	△5.0	△3.0				
고	144,645	156,932	137,098	123,673	1,800,648	1,752,457	1,669,699	1,538,576	8.0	9.0	8.2	8.0
증가율		8.0	△13.0	△10.0		△3.0	△5.0	△8.0				
특수	5,448	5,841	5,930	6,187	25,536	25,502	25,670	25,860	21.3	22.9	23.1	23.9
증가율		7.0	2.0	4.0		0.0	1.0	1.0				
합 계	387,980	400,874	351,557	326,091	6,126,745	5,908,292	5,750,930	5,610,109	6.3	6.8	6.1	5.8
증가율		3.0	△12.0	△7.0		△4.0	△3.0	△2.0				

주: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및 탈락자가 발생하므로, 수급자수 연중 최고치 작성

자료: 교육부

교육급여 수급자수 비중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감소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다.²⁾ 둘째, 교육급여는 신청주의 방식이므로 사각

2) 소득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가별·시기별로 달라 일반화가 힘들며,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경합하는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통계청(2010)의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 분석 결과에 따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육급여는 2015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자격요건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지급이 주민센터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의 인상(16.4%)으로 탈수급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수 감소 문제를 예산 추계의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 추계 정확도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전년 대비 62,000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2019년에는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탈수급자 가능성에 대해 기초연금 및 근로소득 인상으로 인한 탈락자 급여 연장은 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결과(적합/부적합)에 근거하여 시·도교육감이 교육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해당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육급여 수급자수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다 정확한 수급자수 산출근거를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출산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까운 35~4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1.72명으로 가장 적고, 500만원 이상 가구가 2.0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현 황

정부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3년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 제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018년 일반회계 전입금 3조 8,927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81억원이다.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에 대한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¹⁾으로 지출되며, 2018년 3조 8,927억원 규모이다.

[2018회계연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	2018		
			본예산	추경	결산
세입	일반회계전입금(91-911)	3,940,881	3,892,717	3,892,717	3,892,717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0	0	0	88,092
세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1601-300)	3,940,881	3,892,717	3,892,717	3,892,717

자료: 교육부

동 회계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의 일부와 국고이며,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의 41.2%를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였다. 다만, 2019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를 교육세에서 지원하고 이를 제외한 어린이집 소요분(1조 9,812억원)을 국고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1061-30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의 재원분담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2018		2019	
		비중		비중		비중
교육세	30,809	78.2	18,341	47.1	18,341	48.1
국고	8,600	21.8	20,586	52.9	19,812	51.9
합 계	39,409	100.0	38,927	100.0	38,153	10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기한을 감안하여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2016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였으나, 2017년에 3년 한시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해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해 일부(8,600억원)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2019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를 제외한 어린이집 소요분 전액(1조 9,812억원)을 국고 지원하였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규모]

(단위: 억원)

재원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입	교육청(교부금)	39,455	40,420	-	-	-
	특별회계	-	-	39,409	38,927	38,153
	- 교육세	-	-	30,809	18,341	18,341
	- 국고	-	-	8,600	20,586	19,812
세출	유치원	18,663	19,873	18,533	18,341	17,628
	어린이집	20,792	20,547	20,876	20,586	20,525
	세출 합계	39,455	40,420	39,409	38,927	38,153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19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가능한 대안은 ① 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안, ② 특별회계를 종료하고 유치원은 교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이원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③ 특별회계를 종료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현재 정부부처, 여당에서는 위 3가지 대안 중 특별회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²⁾

누리과정 재원분담 방안 논의 시 지방교육재정 여건의 변화가 다각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누리과정 재원분담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진행되었던 2014~2015년에는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2013년 41.1조원 → 2014년 40.9조원 → 2015년 39.4조원)하였지만, 내국세 규모에 연동되어 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증가추세(2010~2018년 연평균 증가율 6.2%)에 있으며, 특히 2015년 39.4조원에서 2018년 52.5조원으로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이 10.0%로 상승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8년 920만원으로 2010년 441만원의 2배 이상이며, 향후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인당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유아(3~5세아) 수 감소에 따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액은 2016 ~ 2019년 동안 2,980억원 감소하였으며, 실집행액은 더 감소하여 2017년 891억원이 불용되었다. 향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유아(3~5세아)는 2017년 136만명에서 2025년 87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유아수 감소에 따라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여당은 최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2019. 5. 23.)하였으며, 현재 일몰기한을 5년 연장(2019→2024년)하는 법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0689호)]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예산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금액	지원인원		
2016	4,042,009	1,297,34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전	
2017	3,940,881	1,281,450	3,751,793	89,088
2018	3,892,717	1,275,020	교육부 취합 중	
2019	3,744,037	1,227,017	-	

주: 2019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 제외

자료: 교육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른 유아(3~5세아) 추이]

(단위: 만명)

연도	201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67
유아수	136	124	115	104	96	91	87	99	105	96	87	81	71	62	64

자료: 통계청

한편, 누리과정 도입 이후 동결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단가에 대한 인상, 신규 교육수요 발생 등은 재정지출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지방교육재정 전망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하고 있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수립하여 누리과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8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전입금 3조 8,927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8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집행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다.

[2018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결산	2018		
			본예산	추경	결산
세입	일반회계전입금(91-911)	3,940,881	3,892,717	3,892,717	3,892,717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0	0	0	88,092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집행 잔액만을 반납하도록 하고 발생한 이자는 시·도교육청이 사용하도록 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발생 이자는 현재 시·도교육청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시·도교육청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비특별회계의 다른 사업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함에 따라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의 집행 잔액 발생이자 부분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전체에서 발생하는 이자 간에 회계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도 이자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9조(잉여금의 처리)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자도 특별회계 세입 처리가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교육부가 집행잔액만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수입도 반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¹⁾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5,000명, 3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신규사업이다. 교육부는 2018년 24억원의 예산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교부하였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1억원을 집행(실집행률 47.0%)하고 13억원을 이월하였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2,391	2,391	2,391	2,391	-	2,391	1,124	1,267	-	47.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1차년도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집행률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18년 예산현액 23억 9,100만원 중 11억 2,400만원(47.0%)이 집행되고 12억 6,700만원(53.0%)이 이월되었다.

이는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어 2018년 6월말에 1차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11월까지도 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원자 선정이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어 바우처를 사용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31-304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일자]

(단위: 명)

구분	신청일자	신청인원	선정일자	선정인원
1차	'18.6.29~7.19	1,509	2018.08.03	1,414
2차	'18.7.20~7.26	456	2018.08.10	407
3차	'18.8.27~9.20	1,265	2018.10.12	1,170
4차	'18.9.21~10.19	582	2018.11.02	535
5차	'18.10.30~11.23	1,262	2018.12.10	1,130
6차	'18.11.26~12.14	777	2018.12.28	705
합계		5,851	-	5,361

주: 전체 예산규모(4,831명 지원) 대비 110.97% 선정되었음

자료: 교육부

사업 신청 및 선정이 지연된 것은 2018년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모집·선정 시스템 구축·연계²⁾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접수를 위하여 ① 사업 운영의 법적 기반 마련, 바우처 신청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확보에 관한 법령 정비, ② 신청서 접수 및 자격 검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 ③ 바우처 이용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 서비스 준비 및 관련 시스템 개발을 '18년 5월까지 완료하였다.

또한 6월 신청(8월 선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신규 사업으로서 사업을 알리고 이용자를 모집하는 활동에 장시간 소요되고, 기존의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 사전준비, 홍보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 바우처 사업 운영과 개인정보 수집 등의 획득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18.2) 및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18.4)
 -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 개발 및 바우처 이용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18.5)
 - 자격 검증에 필요한 10개 정보의 보유 기관별(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연계 승인 획득
 - 사회보장정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 자격 검증 시스템 연계 기능 개발
 - 평생교육 바우처 시스템 개발 및 바우처 이용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18.5)
 -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 관리를 위한 금융사(농협카드 및 BC카드)와의 연계 시스템 개발('18.5)

둘째, 바우처를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거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지원의 효과성이 계획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사용이 마감된 바우처 사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1차 선정인원 1,414명 중 전액 미사용자는 317명(22.4%)이며 미사용액이 있어 반납한 전체 인원은 654명(46.3%)이다. 2차 선정인원 407명 중 전액 미사용자는 77명(18.9%)이며 미사용액이 있어 반납한 전체 인원은 168명(41.3%)이다.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명, %)

	선정일자		선정 인원 (A)	전액 미사용 (회수)(B)	비중 (B/A)	일부 미사용 회수 (전액 미사용 포함)(C)	비중 (C/A)
1차	2018.08.03	사용마감	1,414	317	22.4	654	46.3
2차	2018.08.10	사용마감	407	77	18.9	168	41.3
3차	2018.10.12	사용마감	1,170	정산중	-	정산중	-
4차	2018.11.02	사용마감	535	정산중	-	정산중	-
5차	2018.12.10	사용마감	1,130	정산중	-	정산중	-
6차	2018.12.28	사용마감	705	정산중	-	정산중	-
합계			5,361	정산중	-	정산중	-

자료: 교육부

또한 바우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사자가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발급 시기가 지연되어 사용에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선정인원 5,361명 중 1개월 내에 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은 3,658명(68.2%)에 그쳤으며, 선정 후 발급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2018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발급 실적]

(단위: 명, %)

	선정 일자	선정 인원 (A)	발급 시기									
			선정후 1월내		선정후 2월내		선정후 3월내		선정후 4월내		선정후 5개월 이상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1차	2018.08.03	1,414	994	70.3	117	8.3	37	2.6	26	1.8	34	2.4
2차	2018.08.10	407	275	67.6	23	5.7	15	3.7	4	1.0	3	0.7

(단위: 명, %)

	선정 일자	선정 인원 (A)	발급 시기									
			선정후 1월내		선정후 2월내		선정후 3월내		선정후 4월내		선정후 5개월 이상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3차	2018.10.12	1,170	737	63.0	100	8.6	52	4.4	36	3.1	45	3.9
4차	2018.11.02	535	373	69.7	41	7.7	29	5.4	12	2.2	9	1.7
5차	2018.12.10	1,130	770	68.1	126	11.2	41	3.6	11	1.0	6	0.5
6차	2018.12.28	705	509	72.2	60	8.5	14	2.0	7	1.0	2	0.3
합계		5,361	3,658	68.2	467	8.7	188	3.5	96	1.8	99	1.9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의 취지는 저소득층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소득층이 평생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 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등 다양하기 때문에 미사용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는 체크카드를 통해 사용하는 클린 전자바우처 형태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이 농협은행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것에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카드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를 이용한 평생교육 강좌 유형별 현황이 학력보완교육(48%), 직업능력향상교육(16%), 문화예술교육(16%) 등으로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상담 지원과 연계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저소득층)의 평생교육 바우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학력보완 등 초기 평생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를 통한 탈수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¹⁾은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서비스 제공, 시·도센터 업무지원 등을 통한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학부모지원센터) 출연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의 2018년도 예산현액 2억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230	230	0	0	230	230	0	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법」 제19조²⁾에 따라 설립되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의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출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403-300

2)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

④ 진흥원은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의 구축, 평생교육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부모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평생교육법」 제19조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며, 진흥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직제규정」 제8조제1항제12호3)에 근거하여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육을 평생교육에 포함하고 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⁴⁾

그러나 학부모교육을 평생교육에 포함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로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평생교육법」⁵⁾은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은 다른 평생교육과 달리 특정시기 성인만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고, 학부모교육의 개념 및 사업목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 학부모교육을 평생교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교육은 평생교육의 독자적인 유형으로 정립되기 어렵고, 기존 유형에 포섭되는 것도 아니므로, 국가평생교육원의 고유업무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⁶⁾은 가족교육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건강가정진흥

3) 「국가평생교육원 직제규정」

제8조(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 ①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2. 교육부 위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상정(유은혜 의원, 8905, 17.8.31발의, 18.3.19상정)되어 계류 중

5)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6)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진흥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부모교육과 유사한 부모교육, 강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강가정진흥원의 교육대상은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부모이므로, 교육부의 부모교육 지원대상인 학부모를 포함하고 있다.

[부모교육 사업]

	교육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2018년 결산)	전국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지원 (230백만원)	취약위기가족지원 (찾아가는 부모교육) (748백만원)
산하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현장기관	시군구 지역학부모지원센터 (93개소)	시군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1개소)
교육대상	학부모	모든 부모(예비부모 포함)
사업내용	- 부모교육 - 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 강사관리 - 찾아가는 부모교육 (기업, 군부대, 문화센터 등)	- 부모교육 - 강사관리 - 찾아가는 부모교육(기업 등) - 취약위기가족 지원 - 부모역량강화사업(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자료: 교육부, 여성가족부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 훈련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가. 현 황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2017년 설치된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자문기구로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에 지원된 2개의 세부사업은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이다.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¹⁾은 교육개혁 및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교육회의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8년 예산현액 32억 3,900만원 중 2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3,118	3,118	254	△134	3,239	2,918	29	291
- 일반수용비	1,546	1,546	0	△791	755	715	0	40
- 일반용역비	153	153	54	650	858	826	29	2

자료: 교육부

내역사업별 집행실적을 보면 일반수용비의 본예산은 15억 4,600만원이며,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사업(일반용역비) 및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으로 세목조정 또는 내역변경(7억 9,100만원 감액)한 예산현액 7억 5,500만원 중 7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일반용역비의 본예산은 1억 5,300만원이며, 일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7031-312

반수용비로부터 세목조정(6억 5,000만원 증액)한 예산현액 8억 5,8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²⁾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된 사업이다. 2018년 예비비 17억원과 내역변경을 통한 증액 1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억원이며,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론화 추진	0	0	134	1,698	1,832	1,832	0	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수행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는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관련 업무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8억 4,800만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18억 3,200만원 등 총 26억 8,000만원 규모이다.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에서 투입된 예산은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이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은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이다.

2) 코드: 일반회계 7031-314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에 집행한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비목	당초예산	예산현액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관련 집행액	당초 계획 사업 집행액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일반수용비	1,546	755	390	325
	일반용역비	153	858	458	368
	소계			848	693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일반용역비	1,666	1,800	1,800	예비비로 당초 계획 없음
	국내여비	19	19	19	
	사업추진비	13	13	13	
	소계			1,832	
합계				2,680	-

자료: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특히, 2018년 1~12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수행한 회의개최 내역(197회) 중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 관련 회의가 81건으로 41.1%를 차지하며,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등 타 위원회는 계획 보다 적게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당초 15억 4,6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당초 계획한 위원회 운영에 소요된 일반수용비는 3억 2,500만원(21.7%)이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 회의 개최 실적]

(단위: 회)

회의명	실적			
	(2018.1~12월)	전체회의	소위원회	기타회의
유초중등교육전문위원회	39	14	20	5
고등교육전문위원회	25	13	4	8
미래교육전문위원회	30	17	7	6
교육비전특별위원회	22	9	6	7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16	8	0	8
자문위원회	0	0	0	0
공론화위원회	65	13	37	15
합 계	197	74	74	49

주: 기타회의는 교육부 업무 추진 상황 협의, 이슈 논의 회의 등임

자료: 교육부

2018년에는 국가교육회의 지원단 인력 다수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담당하고 3개 전문위원회 및 1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역할을 담당하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집중되어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당초 고려했던 대내외적인 의견수렴이나 논의의 활성화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가교육회의는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해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특정현안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의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예산안 편성 시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로 조정하여,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운영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포털 시스템 ISP 수립 용역 추진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이다.

2018년도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일반용역비 편성 내역을 보면, 당초 교육정책 학술대회, 세미나 행사대행 용역계약으로 1억 5,000만원, 직원워크숍 등 300만원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018년도 국가교육회의운영지원 일반용역비(210-14) 예산편성 내역]

(단위: 천원)

내역	예산
교육정책 학술대회, 세미나 행사대행 용역계약(3건)	150,000
직원 워크숍, 체육행사 등(1건)	3,000
합 계	153,000

자료: 교육부

일반용역비의 집행 결과를 보면, 교육부는 당초 계획한 일반수용비가 남아 이를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6억 5,000만원)하여 8억 2,645만원을 집행하였다. 일반용역비는 국가교육회의 운영 지원(7,348만원), 전문위원회 진행(1,734만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관련 사업(4억 5,769만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사업(2억 7,795만원)에 지출되었다.

[2018년 국가교육위원회 일반용역비 지출 내역]

(단위: 원)

	지출일	지출 내용	지출액
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	2018. 2. 14.	국가교육회의 워크숍 용역, 홍보용 물품 제작, 홈페이지 구축	73,482,880
전문위원회 진행	2018. 5. 9. /10. 1.	고등교육전문위원회 경청회 진행용역	17,336,000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2018. 6.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 행사	43,400,000
	2018. 10.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TV 토론회	118,900,000
	2018. 7.	대입제도 개편 온라인 국민의견수렴 플랫폼 구성 등	295,385,100
	소 계		457,685,100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지원	2018 11. 28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진행	54,000,000
	2018 12 21. /12 27.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콘텐츠(프레젠테이션, 영상) 제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TV다큐멘터리 대금	155,750,000
	2018 12 27.	국가교육위원회 포털 시스템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 용역 선급금 지급	68,200,000
	소계		277,950,000
합 계			826,453,980

자료: 교육부

그러나 국가교육회의가 일반수용비를 연도 말에 국가교육위원회 포털 시스템 ISP 수립 용역 추진에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이며 미래사회 대비 국가교육비전 및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수행할 것이 예상되는 정부조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³⁾이 국회에 발의 되어 논의 중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법이 미비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운영 방향·기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법적 근거가 없고 운영방향 등이 확정되지 않은 정부조직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19.3.25) 등

셋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예비비 관련 지침을 위반하였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⁴⁾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비비가 배정(5.18.)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비용에 예비비를 지출하였다. 예를 들어,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은 5월 10일, 5월 14일에 개최되었으며, 이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 사업에서 지출하였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관련 공론화 추진의 지출 내용]

(단위: 원)

지출 내용	회의 개최일	금액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참석여비	5.17.	368,200
대입제도개편 이해관계자 협의회 참석여비	5.16.	43,300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참석여비	5.10, 14	174,500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회 참석여비	5.11.	105,500
대입제도개편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참석여비	5.4.	49,800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참석여비	5.3.	253,700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 마당 참석여비	5.10, 14	173,700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향후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예비비 배정 전 발생한 지출원인행위에 대해 지출하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다. 예비비 배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3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현 황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국립대학 운영지원¹⁾ 프로그램 내 10개 세부사업으로 지원(교육부 일반회계)한다. 국립대학 운영지원의 2018년 예산현액 2조 5,561억원 중 2조 5,144억원을 집행하고 15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02억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립대학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립대학 운영지원 (2700)	2,522,406	2,522,406	3,339	△1,757	32,118	2,556,107	2,514,382	1,549	40,177
국립대학 인건비	1,561,843	1,561,843	0	△1,818	0	1,560,025	1,532,453	0	27,572
국립대학 기본경비 (총액 대상)	23,355	23,355	0	△1,732	0	21,623	21,605	0	18
국립대학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115,855	115,855	409	1,793	0	118,058	118,052	0	6
국립대학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59,480	59,480	0	0	0	59,480	59,428	0	52
국립대학교수보직 수행경비지원	19,255	19,255	0	0	0	19,255	19,217	0	38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1,959	1,959	0	0	0	1,959	1,953	0	6
특수목적대학 실험지원	9,192	9,192	0	0	0	9,192	9,159	0	33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12,344	112,344	0	0	0	112,344	112,163	0	181
국립대학 시설확충	523,031	523,031	2,930	0	0	525,961	512,215	1,549	12,197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험지원	96,092	96,092	0	0	32,118	128,210	128,136	0	74

자료: 교육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프로그램 2700

나. 분석의견

교육부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 회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은 「국립대학 회계법」²⁾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별도의 대학회계를 두고 국가 지원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 회계법」이 제정(2015년)되기 이전에는 국립대학 회계를 ‘교육부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로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며, 교육부 일반회계는 등록금을 수입으로 하며, 대학 기성회계는 기성회비를 수입으로 하였다. 2015년 「국립대학 회계법」을 제정한 취지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두 회계를 통합하여 대학에 ‘대학회계’를 두고, 대학이 국고지원금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립대학 회계법 전후 대학재정 운영 방식]

	국립대학 회계법 제정 이전	국립대학 회계법 제정 이후
대학회계	• 기성회계(비국고회계) • 일반회계(국고회계)	대학회계 (비국고회계와 국고회계 통합)
국고지원 사업	•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 - 인건비(4개 세부사업): 국립대학 인건비,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비지원,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 경상적 경비(2개 세부사업):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대상),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 시설확충비(4개 세부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특수목적 대학 실습지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 실습지원	

자료: 교육부

2)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학 지원사업을 「국립대학 회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운영방식을 유지함에 따라 동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국립대학 회계법」 제4조³⁾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경비를 총액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방식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경비 성격별로 총액으로 지원하는 대신 국립대학 운영사업을 「국립대학 회계법」 제정 이전과 같이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는 4개 세부사업(국립대학 인건비, 국립대학교수보직수행비지원,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국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경상적 경비는 2개 세부사업(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대상), 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으로 각각 지원하며, 시설확충비는 4개 사업(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국립대학 노후선박건조 및 승선실습지원)으로 각각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국립대학 회계법」 제4조제2항은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항목을 예시한 것이며 일부 사업은 정책목적 달성 및 지원을 위한 대학재정 지원사업 성격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립대학 회계법」에 총액 교부 규정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정 이후에도 국립대학 지원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현재 10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 지원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현 황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¹⁾은 2017년 추경에 도입되어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교육부 일반회계 9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90억원을 합한 180억원 규모이다. 교육부는 2017년 초등학교 662교(13,563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으며 연구용역비 1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18년에는 이월된 연구용역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다.

[2018회계연도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0	0	112	0	112	112	0	0

자료: 교육부

2018년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2018. 4. 6.)에 따라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지방비(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추진하였다. 동 대책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공기정화장치 우선설치 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하며, 2018년도에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018년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에 필요한 예산 약 2,200억원(교실당 평균 2백만 원으로 산정)을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31-309

나. 분석의견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기계환기설비 우선설치를 규정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기계환기설비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하였다.

교육부는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 2018년도에는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 설치하기 위해 지방비 2,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2018년 시·도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집행 결과를 보면, 1,111억원의 예산으로 13,785개 학교 115,213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의 계획 보다 많은 수의 공기정화장치를 적은 예산으로 설치하였다.

[2018년 시·도교육청별 공기정화장치 설치 자원 확보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개)

시·도교육청	금액	학교수	교실수
서울	329	768	13,172
부산	4,575	738	10,328
대구	3,721	529	1,618
인천	2,447	686	9,411
광주	3,448	462	3,397
대전	3,203	542	8,655
울산	1,167	233	946
세종	968	146	2,413
경기	64,568	2,386	22,490
강원	1,348	757	4,839
충북	1,270	803	5,002
충남	1,973	1,239	12,329
전북	305	517	1,527
전남	12,656	1,339	6,328
경북	1,396	1,484	2,322
경남	7,269	915	8,892
제주	425	241	1,544
합 계	111,068	13,785	115,213

자료: 교육부

이는 교육부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²⁾을 마련(2018. 3.)하여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많은 시·도교육청이 설치 및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기 보다는 단가가 낮은 공기청정기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2월 현재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중 기계환기설비 설치 비중은 23.0%에 불과하고, 74.8%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월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실적]

(단위: 개, %)

시·도교육청	기계환기설비 (A)	공기청정기 (B)	기타(창문형 등) (C)	합계 (A+B+C)	중복설치 ¹⁾
서울	2,637	24,737	456	27,830	1,694
부산	949	11,268	0	12,217	0
대구	3,769	3,581	0	7,350	2,017
인천	2,238	8,981	141	11,360	382
광주	931	4,524	102	5,557	613
대전	465	8,262	47	8,774	98
울산	906	1,853	10	2,769	13
세종	2,085	558	0	2,643	230
경기	17,393	17,050	1,987	36,430	8,479
강원	884	5,691	256	6,831	959
충북	1,180	6,008	2	7,190	1,145
충남	5,364	17,924	59	23,347	11,018
전북	1,259	3,076	315	4,650	593
전남	1,481	7,329	21	8,831	0
경북	588	3,827	359	4,774	0
경남	649	12,569	462	13,680	628
제주	0	2,099	20	2,119	20
합계	42,778	139,337	4,237	186,352	27,889
비중	23.0	74.8	2.3	100.0	15.0

주: 1)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기타 등의 중복설치 된 실수

자료: 교육부

2)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1. 일반사항

- 가. 학교 교실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미세먼지 여과장치가 내장된 기계환기설비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나. 신축교사(리모델링 포함)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 다. 기존의 교사(校舍)는 학교 건축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공동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기계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공기청정기는 장시간 가동시 이산화탄소와 기타 오염물질 증가 우려가 있으나 기계환기설비는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외 오염물질 제거 효과가 있어 공기청정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비교]

구분	기계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원리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공기를 필터를 거쳐 실내로 유입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기기에 부착된 필터를 통해 제거
장점	-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 가능 - 미세먼지 외 오염물질(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제거 효과	- 실내 공기 순환기능으로 장시간 가동시 입자상 미세먼지 저감효과
단점	- 외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필터 성능이 낮은 경우 미세먼지 실내 유입 가능 - 냉·난방기 가동시 에너지 효율저하 - 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기간 소요	- 장시간 가동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 실내 밀폐상태에서 장기간 가동 시 기타 오염물질(포름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증가 우려
유형	- 공조시설,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 등	- 공기청정기, 냉난방기기(필터 부착) 등
설치 용량	550m³/h 이상(25인 기준)	약 100m²이상(바닥면적 66m² 1.5배)
설치 가격	200~400만원(실당)	100~200만원(실당)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기계환기설비의 경우도 필터 성능이 낮은 경우 미세먼지 실내 유입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 관리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¹⁾은 후학습자(후진학자 포함)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형성 지원을 위해 대학에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의 2018년도 예산현액 175억 3,000만원 중 17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2,730	17,530	0	0	17,530	17,404	0	126

자료: 교육부

2018년 48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교육부는 8개 대학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학 선정이 이루어지며, 2018년 본예산 사업의 경우 2018. 1. 16.~3. 16. 동안 신청을 받아 2018. 4. 12.에 13개 대학을 선정하였고, 추경예산 사업의 경우 5. 25.~6. 25. 동안 신청을 받아 2018. 7. 10.에 8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본예산으로는 가톨릭관동대 등 13개 대학에 10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경예산으로는 경상대 등 8개 대학에 48억원을 지원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134-300

[2018년도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의 선정대학 및 지원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예산		
대학	지원액	중간평가 인센티브	대학	지원액	중간평가 인센티브
가톨릭관동대	900	-	경상대	300	-
경일대	840	-	경희대	300	-
동국대	504	-	대구한의대	300	-
명지대	1020	60.19	동덕여대	300	-
부경대	1080	-	동서대	900	-
서울과기대	960	-	제주대	900	-
서원대	840	-	청운대	900	-
순천대	675	-	한성대	900	-
아주대	340	-			
영산대	1200	-			
조선대	720	-			
중앙대	300	-			
한밭대	1080	64.81			
합 계		10,584	합 계		4,800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첫째, 추경예산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과 충원률이 낮은 등 추경예산의 사업성과가 본예산에 비해 저조하다.

2018년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대학의 학과 중 충원률이 낮은 학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원률이 50%에 미달하는 학과는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융합과(48.0%), 동서대학교 경찰사법학부(25.0%), 동서대학교 미래ICT융합학부(20.69%), 제주대학교 건강뷰티향장학과(38.46%),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46.15%), 한성대학교 법·행정학과(21.74%) 등이다.

[추경 예산 지원대학 학과충원률]

(단위: %)

대학명	학과	2019년 충원율
경상대학교	산업경영학과	100.00
	해양산업융합과	48.00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	99.17
대구의대의대학교	평생교육융합학과	100.00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100.00
동서대학교	경찰사법학부	25.00
	미래ICT융합학부	20.69
제주대학교	건강뷰티향장학과	38.46
	관광융복합학과	51.28
	부동산관리학과	65.79
	실버케어복지학과	46.15
청운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100.00
	사회적기업학과	68.00
	창업경영학과	56.00
	청소년상담교육학과	68.00
한성대학교	법·행정학과(야)	21.74
	뷰티디자인학과(야)	90.91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78.26
	호텔외식경영학과(야)	90.91

자료: 교육부

추경예산에서 선정된 대학의 충원률은 본예산에서 선정된 대학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예산의 경우 충원률이 30% 이하인 학과가 없으며 충원률이 70%를 초과하는 학과 비중이 82.5%이지만, 추경예산의 경우 충원률 30% 이하인 학과 비중이 15.8%로 높은 수준이며 70%를 초과하는 학과 비중은 42.1%로 낮은 수준이다.

[2018년 사업대학의 학과충원률(2019년) 분포]

(단위: 개, %)

충원률 범위	본예산		추경 예산	
	학과수	비중	학과수	비중
충원률 30% 이하	0	0	3	15.8
30% 초과 ~ 50% 이하	3	7.5	3	15.8
50% 초과 ~ 70% 이하	4	10.0	5	26.3
70% 초과	33	82.5	8	42.1
합 계	40	100.0	19	100.0

자료: 교육부

이는 추경예산의 신청대학 및 선정대학의 경우 대부분 2017년, 2018년에 동 사업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대학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대학 중 대구한의대학교를 제외하고 모두 이전에 동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대학들이다. 동덕여자대학교와 동서대학교의 경우 2017년에 탈락한 대학이며, 경상대학교 등 나머지 5개 대학은 2018년 본예산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대학들이다.

[2018년 추경 사업대학의 이전 신청 및 탈락 현황]

2017년 신청 및 탈락	2018년 본예산 신청 및 탈락	2018년 추경예산 최초 신청
동덕여자대학교, 동서대학교	경상대학교, 경희대학교, 제주대학교, 청운대학교, 한성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자료: 교육부

또한 2019학년도 대입전형은 2018년 9월부터 진행되었는데, 본예산 사업 선정 대학은 2018년 4월 12일에 확정 통보되어 입학전형에 대비하여 준비하고 홍보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추경예산 사업 선정대학의 경우에는 2018년 7월 10일에 확정 통보되어 준비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본예산 사업대학에 비해 적었다.

추경사업은 본예산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성과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향후 추경 사업 추진 시 대학 선정을 신중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경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공모 및 선정 등 추경사업 추진 시 본예산 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본예산안에서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중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사업’ 예산을 30억원 편성하였으나, 국회는 학부에 사회적경제 학과 육성 필요성 미흡,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점, 국비지원 필요성 미흡 등으로 전액 삭감하였다.

교육부가 2018 추경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대학 중 청운대가 포함되어 있으며, 청운대는 사회적기업학과²⁾를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공모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대학 단위로 선정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계획을 제출한 교육과정에 대해 선별하여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사회적경제학과를 국고로 지원하여 활성화하려는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사회적경제학과 개설 예산을 삭감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사회적경제 지원이라는 특정 목적을 갖고 진행되지는 않으나, 교육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기업학과는 정원 25명이며, 청운대학교는 사회적기업학과의 역할을 사회적기업 연구, 컨설팅 비즈니스 운영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개발, 사회적기업 선구자가 되기 위한 국제적 안목 함양, 사회적기업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철학 함양,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학문적 지식에 대한 이해능력 배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현 황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프랑스 유학 중인 우리나라 유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 및 다국적 유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기숙사이다. 사업기간은 2014~2019년(2016.6월 착공, 2018.7월 준공)이고, 총사업비는 국고 175억원, 사학진흥기금 융자액 175억원을 합한 350억원 규모이다. 2018년 국고 28억원 중 27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 융자 81억원 중 77억원을 집행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다.

[2014~2018년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국고보조금					사학진흥기금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금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금
	전년 이월금	당해 교부금	소계			전년 이월금	당해 교부금	소계		
2014	0	2,000	2,000	88	1,912	0	0	0	0	0
2015	1,912	2,000	3,912	2,295	1,617	0	2,500	2,500	10	2,490
2016	1,617	5,400	7,017	7,013	4	2,490	7,500	9,990	1,076	8,914
2017	4	8,100	8,104	5,232	2,872	8,915	7,500	16,415	8,284	8,131
2018	2,872	0	2,872	2,739	133	8,131	0	8,131	7,710	421

자료: 교육부

교육부 주관 하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업을 수행하며, 건립규모는 지상 9층, 지하 1층이며, 총 252개실(사생실 250, 숙소 2), 식당, 체력단련실, 학습실, 공연장(200명 규모)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공후 소유권은 파리대학교육청, 운영권은 한국관 공익재단이 소유하며, 공익재단 이사회(12명)는 주불 한국대사가 이사장이며, 공익재단 사무국은 관장 1명, 부관장 1명¹⁾, 행정실무관 1명, 시설관리 1명, 안내 2명으로 조직되었다. 공익재단은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기숙사비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사학진흥기금 용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나. 분석의견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의 원활한 운영 및 사학진흥기금 용자 원금·이자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은 2018년 6월부터 입사생을 선발하였으며, 2019년 5월 현재 입사생은 총 165명(외국인 학생 57명)으로, 정원(250명) 대비 입주율은 67.2% 수준이다.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의 신청 자격은 학생 자격, 연구원 자격, 예술인·문화 분야 종사자 자격 등으로 구분되며²⁾ 자격요건이 석박사 과정에 등록된 사람 등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어학연수 학생 등의 지원자가 탈락되고 선발 후에도 입사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입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관장은 주불한국교육원장(공모), 부관장은 주불한국교육원 부원장(국가직 공무원)이 겸한다.

2) 「파리 국제대학촌 입사와 거주에 관한 규정」

가. 학생 자격

(1) 나이 : 18세 이상

(2) 학력 : 최소 학사 학위(Bac+3) 이상 소지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지닌 자

(3) 기본자격 : 프랑스 공·사립 고등교육기관 또는 프랑스 고등교육기관과 협약이 체결된 외국교육기관(국가 또는 국가 인정 학위 수여기관)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등록된 사람 ※ 일드프랑스 지역 고등교육 기관 등록자 우선

(4) 예외자격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의해 파리지역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부 3학년 학생

- 예술분야 학생의 경우 국가학위 과정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3년 이상 과정에 등록된 경우 가능

- 프랑스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우수 운동선수

나. 연구원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엔지니어 또는 의대 졸업생 가능)로 고등교육(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중이거나, 일드프랑스 내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가 초청한 사람

다. 예술인·문화 분야 종사자 자격: 학위 수료 후 전시회, 공연, 연구프로젝트 등을 위해 일드프랑스 내에 거주하는 예술인 또는 문화 관련 직업 종사자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입주 현황]

(2019. 5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지원자 (A)	선발 인원 (B)	미입사 인원 (C)	최종 입사 인원 (D=B-C)	중도 퇴사 (E)	만기 퇴사 (F)	현재 입사 인원 (D-E-F)
1차 선발 (18.06.01~28)	177	151	56	95	4	38	53
2차 선발 (18.07.13~07.31)	64	48	6	42	3	4	35
3차 선발 (18.09.01~10.16)	100	75	42	33	-	-	33
4차 선발 (19.01.01~02.01)	173	42	2	40	-	5	35
5차 선발 (19.02.02~03.31)	29	10	-	10	-	1	9
합 계	543	326	106	220	7	48	165

주: 한국관에 선발되었으나 타 거주지 확보 및 기숙사비 미납 등으로 미입사한 인원임
자료: 교육부

그러나 한국관 공익재단은 입학생 입주율 90%를 가정하고 기숙사비 등 21억 원의 수입을 조달하여 인건비, 용자 이자 등에 지출하는 것으로 2018년 (2018.9.1.~2019.8.31.) 예산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입주율이 낮을 경우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입학생 입주율(67.2%)은 계획 90% 보다 22.8%p 낮은 수준이며, 특히 한국관 공익재단은 2018년 예산을 통해 사학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³⁾

3) 또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도 계획(3명) 보다 많은 4명 수준이다

[파리한국관 직원 현황]

(단위: 명)

합계	행정직			안내	기술
	관장	부관장	행정·회계		
6	1	1	1	2	1

주: 안내직원(1명), 기술직은 파트타임
자료: 교육부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예산]

(단위: 천원, 환율 기준: €1=₩1,250)

구 분			금액	비 고
수입	운영수입	기숙사비수입	1,955,070	입주율 90% 산정
		임대수입	9,000	편의시설 임대료
		보조금 및 후원금 수입	1,250	문화 행사 후원금 등
		기타수입	173,923	기숙사 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등
	영업외수입	기타영업외수입	1,250	잡수입 등
합 계			2,140,493	
지출	운영비	인건비	121,250	정규2, 비정규1
		일반관리비	264,829	공동경비 부담금 서비스 수수료 및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1,009,875	외주용역비, 공공요금 및 수선비
		문화행사 개최비	5,000	행사개최 비용
	예비비	예비비	25,000	개관식 개최비용 등
	영업외비용	차입금 이자비용	80,000	융자금 이자
		금융비용	6,325	금융 수수료
		기타영업외비용	2,500	잡손실
	자산취득	유형자산취득	41,250	집기비품, 자산취득
	부채상환비	보증금환급금	162,923	보증금 환급액
		차입금상환금	-	-
	기숙사환급	기숙사비 환급	293,260	중도퇴사시 환급액
	차기이월자금	차기이월금	128,281	장기수선 충당 및 원금 상환 적립
합 계			2,140,493	

자료: 교육부

다만, 교육부는 2019/2020 학년도 한국관 입사생 선발 실시 결과 2019. 7. 19. 현재 249명이 선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8/2019 학년도 입사생 선발 및 입주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입사하는 않는 경우 등이 발생⁴⁾한 것을 고려할 때 운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의 안정적인 입주율 및 수입 확보를 위해서 철저한 사업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4) 2018/2019 학년도 선발인원 326명 중 106명(32.5%)이 미입사하였다.

가. 현 황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¹⁾은 재외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18년 예산현액 690억 7,200만원 중 689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8회계연도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68,939	68,939	133	0	69,072	68,901	80	91

자료: 교육부

이 중 ‘프랑스 현지학교 국제섹션 운영’은 수시배정사업으로 2018년 예산 1억 7,400만원 중 9,700만원(55.7%)이 배정되었으며, 집행기관은 프랑스 한국교육원이 다.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으로 선정한 사유는 동 사업은 프랑스와의 ‘국제섹션 신설 행정약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내 프랑스어 국제섹션이 미설치된 상황이므로, 사업의 상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랑스 현지학교 국제섹션 운영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 한·불 상호간 상대 국어 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및 교류활성화 도모 필요
- 양국 정부 간 ‘국제섹션 신설 행정약정(2016. 6. 2.)’ 체결에 따라 각국 내 상대국 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섹션 개설 결정
 - *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신설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2016. 11.)
 - * 교사 파견(2017. 8.) 및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개설(2017. 9.~)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4331-300

- 사업내용
 - (개념) 프랑스 초중등학교 정규교과 내 언어교과(한국어, 한국문학) 및 비언어교과(수학)를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이중 언어로 수업하는 심화학습 과정
 - (교육과정) 한국어, 문화교과(5~6시간), 수학(2시간)으로 주당 7~8시간 편성 운영
 - (운영현황) 프랑스 내 3개 학교(초등 1, 중등 2) 내 각 1개 학급 운영
 - (교수인력) 파견교사 2명, 현지채용교사 2명

자료: 교육부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은 2019년 3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3과정이 운영 중이며 등록 학생 수가 증가 추세이지만 등록 학생수는 총 10명에 불과하다. 또한 고등학교 국제섹션은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 설치 및 등록학생 현황]

학교명	학교규모	국제 섹션 학생 수	
		2017.9~2018.2	2018.3~2019.2
Armand Silvestre 초등학교	학급수: 17학급 학생수: 436명	2명	1명
Les Bruyeres 중학교	학급수: 23학급 학생수: 625명	1명	5명
Vauban 중학교	학급수: 18학급 학생수: 600명	1명	4명
합계		4명	10명

자료: 교육부

나. 분석의견

국제섹션 신설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한국 내 프랑스 섹션이 미설치 되었으며, 2019년 진행 중인 후속조치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프랑스 섹션 개설 및 비용 부담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국제섹션 신설 행정약장’에 따라 각국 내 상대국 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제섹션 개설이 결정되었다.

2018년 교육부는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3개)을 운영하였으며, 한국에서 교사와파견(2명) 및 현지인력(2명)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프랑스 정부에 프랑스섹션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지만, 프랑스는 한국이 한국 내 프랑스어 섹션 개설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2018년 한국 내 프랑스어 섹션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섹션 신설 행정약정’이 프랑스 내 한국어 국제섹션에 대해서는 교사 파견 및 비용부담을 명확하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 내 프랑스 섹션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²⁾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사전에 약정 해석이나 이행에 관해 협상을 통해 추진방식을 분명히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 교육부 국제협력관과 프랑스 교육협력국 부국장 면담(2019. 6. 6.)을 통해 한국 내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 국제섹션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는 사업의 상호성을 존중하여 수시배정사업으로 관리하고 지원예산을 인건비(9,700만원)로 최소화하여 지원하였으나, 2019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1억 6,800만원을 프랑스 한국교육원으로 교부하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국 내 프랑스어 섹션 개설 및 프랑스의 비용부담에 대한 후속조치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국제섹션 신설 행정약정」

제4항 프랑스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와 한국 교육부의 역할

B. 한국 교육부의 역할

- a. 한국 교육부는 한국 국제섹션 고유교과(언어 및 문학, 비언어 교과)를 담당할 교사를 임명한다. 이 교사들은 한국 국제섹션에 등록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프랑스 학교 기관에 배치된다. 한국당국은 교사들의 급여를 부담한다. 이 교사들의 임명은 프랑스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략) 제7항 국제섹션에 준하는 한국 내 프랑스어 프로그램(언어 및 문학, 비언어 교과) 개설

학생들의 유동성과 교사의 유동성은 양국 중 각국 문화의 심오한 이해와 양국관계의 발전, 국민들 간의 우호 증진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인지하면서, 양측은 상호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학교 내에 프랑스의 국제섹션에 준하는 프랑스어 프로그램(언어 및 문학, 비언어 교과) 개설을 장려한다.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결산 분석 안내

	주 제 명	해당 페이지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상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189
2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장학금의 소득역진적 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 제시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196
3	한국장학재단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의 소요예산 추계 적정성 미흡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00
4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정보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추진 필요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II」 pp.203

집 필

총괄 |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 서 세 옥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 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 성 은 예산분석관

지 원 | 이 지 은 행정실무원
김 승 미 자료분석지원요원

결산분석시리즈 II 2018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9년 8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태영특수프린테크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183-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